

# 고노담화



# 30년과

# 쟁점



신청 QR

일정 : 2023년 5월 20일 오후 1시

장소 : 성공회대학교 새천년관 7308 (대면, 비대면 병행)

공동 주최 :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인문한국)HK+ 사업단

신청 링크 : <https://forms.gle/HRcWsk18GpQVoHSD7>

문의.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인문한국)HK+ 사업단  
([jmssrnetwork@gmail.com](mailto:jmssrnetwork@gmail.com)), (<https://jmssrn.org>)

지원  
한국연구재단



“고노담화 30년과 쟁점”	
14:20 ~ 16:00	“고노담화 30년과 쟁점” 사회 : 황선익(국민대학교)
14:20 ~ 15:10	<p>“고노담화 30년과 역사부정론”</p> <p>발표 : 김창록(경북대학교) 토론 : 이영채(게이센여학원대학)</p>
15:10 ~ 16:00	<p>“아베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에 대한 재검증”</p> <p>발표 : 남상구(동북아역사재단) 토론 : 오승희(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p>
16:00 ~ 16:20	쉬는 시간
16:20 ~ 18:00	“최근 연구 동향 및 자료 소개” 사회 : 김수아(서울대학교)
16:20 ~ 17:10	<p>“일본군 위안부 서사 연구”</p> <p>발표 : 이지은(서울대학교) 토론 : 송혜림(연세대학교)</p>
17:10 ~ 18:00	<p>“식민지 조선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료집4 : 국제연맹과 동양여성아동매매실지조사단과 일제의 인신매매 문제” 해제</p> <p>발표 : 박정애(동북아역사재단) 토론 : 백재예(메사추세츠 주립대)</p>

# 프로그램

시간	내용
<b>1부</b>	<b>고노담화 30년과 쟁점</b> 사회 : 황선익(국민대학교)
14:20~15:10	「코오노담화」 30년과 역사부정론 발표 : 김창록(경북대학교) 토론 : 이영채(게이센여학원대학)
15:10~16:00	아베 정부의 고노 담화에 대한 검증을 재검증 발표 : 남상구(동북아역사재단) 토론 : 오승희(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b>2부</b>	<b>최근 연구 동향 및 자료 소개</b> 사회 : 김수아(서울대학교)
16:20~17:10	일본군 '위안부' 서사 연구 발표 : 이지은(서울대학교) 토론 : 송혜림(연세대학교)
17:10~18:00	제국일본의 성폭력 시스템 관계 자료집 시리즈 해제 : 『식민지 조선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료집Ⅳ 국제연 맹 동양여성아동매매 실지조사단과 제국 일본의 인신 매매』 (동북아역사재단, 2022) 발표 : 박정애(동북아역사재단) 토론 : 백재예(메사추세츠 주립대)

# 목 차

## 1부 : 고노담화 30년과 쟁점

「코오노담화」 30년과 역사부정론

발표문 | 김창록 ..... 1

토론문 | 이영채 ..... 16

아베 정부의 고노 담화에 대한 검증을 재검증

발표문 | 남상구 ..... 19

토론문 | 오승희 ..... 39

## 2부 : 최근 연구 동향 및 자료 소개

일본군 '위안부' 서사 연구

발표문 | 이지은 ..... 42

토론문 | 송혜림 ..... 73

제국일본의 성폭력 시스템 관계 자료집 시리즈 해제 : 『식민지  
조선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료집Ⅳ 국제연맹 동양여성아동매매  
실지조사단과 제국 일본의 인신매매』 (동북아역사재단, 2022)

발표문 | 박정애 ..... 75

토론문 | 백재예 ..... 84

# 「코오노담화」 30년과 역사부정론

김창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I. 머리말

- 1993년 8월 3일에 발표된 코오노 요오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담화(이하 「코오노담화」)의 의의는 무엇인가?
- 이후 30년간 「코오노담화」는 어떻게 형해화되어 왔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 그래서 지금 「코오노담화」와 관련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 II. 일본군‘위안부’ 법적 책임

### 1. 사실

- 일본군은 1932년의 상하이 ‘위안소’를 시작으로, 특히 1937년 중일전쟁 도발 이후 1945년까지 일본군이 점령한 아시아·태평양의 전 지역에 ‘위안소’를 만들거나 ‘위안소’를 지정하여 운영했음.
- 일본군은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지역의 수많은 여성들을 감언·강박으로 ‘위안소’에 끌고 왔음.
- 일본군은 ‘위안소’의 여러 사항에 대해 세세한 규칙을 정하고, 군의로 하여금 성병 검사를 하게 하는 등 ‘위안소’를 관리했음.
- 일본군은 ‘위안부’들의 자유를 구속한 상태에서 성적 착취를 했음.
- 일본군의 행위는 일본 정부 및 식민지 기구와의 연계 아래에 이루어졌음.

### 2. 법 위반

- 위와 같은 일본군의 행위는 다수의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임.
  - 「여성 및 아동의 매매 금지에 관한 조약」(1904, 1910, 1921, 1933) 위반
  - 「육전의 법규관례에 관한 조약」(1907) 위반
  -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ILO 29호 조약; 1930) 위반
  - 노예제 금지에 관한 관습국제법 위반
  - 뉴렘버그(Nuremberg) 국제군사법정 및 토오쿄오(東京) 극동국제군사법정의 헌장에 의해 확인된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 3. 일본의 국가책임

-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해 국가는 책임을 져야 함.
- 따라서 일본군‘위안부’에 대해 일본은 국가로서 책임을 져야 함.

### 4. 국제사회의 법적 상식 확립

- 유엔의 NGO인 국제법률가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의 『‘위안부’ - 끝나지 않은 시련』(1994)
- 유엔 인권위원회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의 보고서(「전시의 군사적 성노예 문제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및 일본 파견 조사 보고서」, 1996)
- 유엔 인권소위원회 ‘무력분쟁하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노예제 유사관행에 관한 특별보고관’ 게이 맥두갈(Gay J. McDougall)의 보고서(「2차 대전 중 설치된 ‘위안소’에 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의 분석」, 1998)
- 2007년 7월 30일 미국 하원의 일본군‘위안부’ 결의안 등 각국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결의안

### 5. 책임의 내용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비전과 미션」  
범죄인정 / 공식사죄 / 법적 배상 / 진실규명 / 역사교육 / 추모사업 / 책임자 처벌
-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2005)
  - “사실 인정과 책임의 수용을 포함한 공적 사과”
  -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이고 신속한 배상”
  - “사실의 검증과 진실의 완전한 공적 공개”
  - “피해자에 대한 기념과 추모”
  - “모든 수준의 교육 자료 안에 자행된 위반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의 포함”
  - “국제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국가에게는 조사할 의무가 있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는 위반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혐의가 있는 사람을 기소할 의무가 있으며, 유죄로 확정된 때에는 처벌할 의무가 있다.”

### III. 「코오노담화」

■ 1993년 8월 4일에 일본 정부는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코오노 요오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의 담화(이하 「코오노담화」)도 발표함. 「코오노 담화」에서는 아래와 같이 밝힘.

1. “위안소의 설치·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
2.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 . . 감언·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이 있고, 나아가 관헌 등이 직접 이 일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고, 특히 한반도는 “우리나라[일본]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그 모집·이송·관리 등도 감언·강압에 의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아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
3.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아래에서 이루어진 가혹한 것이었다.”
4. ‘위안부’ 문제는 “당시의 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문제”이다,
5. “역사연구·역사교육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영원히 기억하고, 같은 잘못을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
6. 전(前) 위안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전한다.”

■ 「코오노 담화」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사죄와 진실규명 및 역사교육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아 틀림이 없음.

■ 다만, 일본 정부와 군의 ‘관여’라는 애매하고 불충분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가해의 주체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배상·추모사업·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범죄인정	△	“관여”
공식사죄	○	
법적 배상	×	
진실규명	○	“역사연구” 약속
역사교육	○	“역사교육” 약속
추모사업	×	단, “영원히 기억”
책임자 처벌	×	

#### IV. 처벌과 배상의 거부 및 그에 대한 추궁

##### ■ 처벌 거부

- 1994년 2월 7일 피해자 대표 6명과 정대협 대표 5명이 토오쿄오(東京) 지방검찰청을 찾아가 한국인 피해자 27명을 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과 정대협의 고발장을 제출함.
- 담당 검사는 “결론으로 대충 읽은 후 ‘수리할 수 없다’”라며 수리 자체를 거부함.
- 그 연장선상에 위치한 「코오노담화」 또한 처벌을 거부한 것이라고 할 것임.

##### ⇔ ‘2000년 일본군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 2000년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토오쿄오에서 개최. 8개국 64명의 피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남북한을 비롯한 피해자 소속국 9개국과 일본의 검사단(남북한은 공동검사단의 형태로 참여), 그리고 국제검사단이 기소했고, 4명의 판사들로 구성된 판사단에 의해 예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01년 12월 4일에 헤이그에서 최종판결이 선고됨.
- 최종판결은, 천황 히로히토(裕仁) 등 피고인 10명에 대해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이유로 “유죄”를 선고함.

##### ■ 배상 거부 =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이하 ‘아시아 여성기금’)

- 일본 정부는 「코오노 담화」 이후에도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보상 문제를 포함하여 일한(日韓) 양국과 양 국민 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고 주장함.
- 그리고 1995년 7월 19일에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을 발족시킴.
- 아시아 여성기금은 일본 국민으로부터 모은 성금 5억 6,500만 엔으로 ‘보상을 위한 금원(償い金)’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일본 정부가 거출한 11억 2,000만 엔으로 의료·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했음. 그 외에도 일본 정부는 아시아 여성기금의 사무사업경비 정부보조금으로 35억 500만 엔을 출연했음.
- 그 결과, 아시아 여성기금의 총 수입 51억 9천만 엔 중 일본 정부가 출연한 금액이 46억 2,500만 엔으로 전체의 89% 이상을 차지하여, 그 사업은 실질적으로는 일본 정부의 예산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아시아 여성기금이라는 형태로 대응한 이유는, ‘법적 책임’은 질 수 없다, 즉 ‘배상은 할 수 없다’는 논리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었음.
- ‘도의적 책임은 지겠지만 법적 책임은 결코 질 수 없다’라는 진정성이 의심되는 그러한 태도에 대해 한국 등 관련국의 피해자, 민간단체 및 정부가 거세게 반발했고, 그 결과 ‘아시아 여성기금’은 2002년 10월에 사업의 종료를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2007년 3월에는 마침내 해산되기에 이름.

⇔ 피해자들의 소송을 통한 배상 요구

- 피해자들은 일본에서 4건의 소송을 통해, 미국에서 1건의 소송을 통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패소함.
- 하지만 2021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김정곤)의 판결에 의해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선고됨.
  1. 반인도적 범죄 : “이 사건 행위는 당시 일본제국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국가면제 적용 배제 : “피고가 된 국가가 국제공동체의 보편적인 가치를 파괴하고 반인권적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가하였을 경우까지도 이에 대하여 최종적 수단으로 선택된 민사소송에서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 . . 불합리하고 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의 해석에는 예외를 허용해야 함이 상당하다.”
  3. 2021년 1월 8일 판결은 일본 정부가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1월 23일 0시에 확정되었으며, 따라서 이제 판결의 집행만이 남은 상태임.

## V. 「코오노담화」 형해화 = 변죽 울리기, 주변 허물기, 용어 비틀기, 억지 부리기

- 일본군‘위안부’ 부정론의 선봉에 선 일본 정부
- 2014년 「코오노담화」 ‘검증’
- ‘강제성 없었다’ = 2017년 아베 내각 각의결정
  -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드러내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
  - ← “관헌이 집에 쳐들어가 사람을 유괴하듯이 끌어간다고 하는 그런 강제성” = 이른바 ‘협의를 강제성’ (2007년 3월 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 아베 수상 답변 )
- ‘종군이 아니다’ = 2021년 스가 내각 각의결정
  -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종군위안부’ 또는 ‘이른바 종군위안부’가 아니라 단지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처(慰安婦問題についての我が国の取組)」
  - “1965년의 일한 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종결”
  - “2015년 12월의 일한 외상회담에서의 합의에 의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
  - 2021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국제법 및 일한 양국 간의 합의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 “한국에 대해 국가로서 자신의 책임으로 즉각 국제법 위반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다시금 강하게 요구”

-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20만’이라는 숫자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숫자이다.”

#### ■ 소녀상에 대한 집요한 공격

#### ■ ‘사죄 할만큼 했다’

- “저 전쟁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우리의 자녀와 손자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죄(謝罪)를 계속하는 숙명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2015년 「아베 담화」)
- “나 자신도 포함하여 앞으로 일본의 수상은 위안부 문제의 ‘위’자도 말하지 않아도 되는 합의로 만들 생각이었다.”(『安倍晋三回顧録』, 中央公論新社, 2023, 171면)

## VI.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다?

#### ■ 「청구권협정」 제2조

1. 양 체약국은 . . .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 . .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3. . . .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본 협정의 서명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 첫째, 한일회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불법강점’에 대한 책임을 부정했기 때문에, ‘식민지 지배의 대가’는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되지 못했으며, 따라서 식민지 지배와 직결되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님.

-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군(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 (2005년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결정」)
-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202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본군 ‘위안부’ 판결)

#### ■ 둘째,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처음 인정한 것은 1992년이므로, 1992년에 비로소 인정한 문제가 1965년의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되었을 수는 없는 노릇임.

#### ■ 셋째, 백보 양보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청구권협정」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일본 정부는 한국인의 청구권이 「청구권협정」 자체에 의해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왔고, 일본 최고재판소도

실체적 권리로서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하므로 당연히 한국 법원이 그 존재하는 청구권의 실현을 명할 수 있는 것임.

## VII. ‘2015 합의’로 해결되었다?

### ■ ‘2015 합의’

- 일본측 표명사항

- ①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 ② “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 ③ “상기 ②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함.”

- 한국측 표명사항

- ① “일본 정부가 상기 1.②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 ②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 ③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함.”

■ 첫째, ‘2015년 합의’는 정식조약이 아니라 비구속적 합의 즉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어떠한 영향도 없음.

- “이 사건 합의의 절차와 형식에 있어서나,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 권리·의무의 창설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되었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 결정)

■ 둘째, ‘2015 합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역사에 비추어 ‘퇴행’이므로 애당초 해결이 될 수 없음.

- 일본 정부의 사죄는 「코오노담화」와 ‘아시아 여성기금’이 피해자에게 전달하려고 한 일본 수상의 「사죄의 편지」의 내용을 반복한 것일 뿐 진전이 없음.
- ‘2015 합의’에는 「코오노담화」에서는 상세하게 인정되었던 관련 사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
- ‘2015 합의’에는 「코오노담화」와 「사죄의 편지」에서는 언급되었던 강제성, 진상규명, 역사교육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음.
- 일본 정부 스스로 10억 엔은 ‘인도적 지원금’일 뿐 배상금이 아니라고 못 박았음.
- 역사문제의 성격상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란 있을 수 없음.

■ ‘2015 합의’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도 확인되었음.

-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는 2016년 3월 7일 배포한 「일본의 정기보고에 대한 최종의견」에서, ‘합의’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은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충분히 채택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para.28), 일본의 지도자와 공무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는 망언을 하지 못하도록 보증할 것, 피해자들의 구제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보상, 만족, 공식사죄 및 재활 서비스를 포함하는 완전하고 효과적인 배상을 제공할 것,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적절하게 반영할 것, 피해자/생존자의 진실, 정의 및 배상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것 등을 촉구했음(para.29).
- UN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는 2017년 5월 30일에 배포한 「대한민국의 정기보고에 대한 최종의견」에서, ‘합의’가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제공하는데 실패하고, 진실에 대한 권리와 재발 방지 확보를 보장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하고(para.47),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재활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는 배상이 제공되고, 진실에 대한 권리와 배상 및 재발 방지의 확보가 보장되도록” ‘합의’를 “개정”할 것을 촉구했음(para.48).
-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6년 3월과 2017년 7월에 거듭 2014년 7월의 「일본 정부의 정기보고에 대한 최종의견」의 아래와 같은 항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의 제공과 조치를 촉구했음.

: (a) ‘위안부’에 관한 모든 혐의에 대한 효과적·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와 범죄자들에 대한 소추·처벌, (b)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정의와 완전한 배상, (c) 가능한 모든 증거의 공개, (d) 교과서의 적절한 기술을 포함하는, 학생들과 일반 대중에 대한 교육, (e) 공식사죄의 표명과 책임의 공식 인정, (f) 피해자들을 모독하거나 사건을 부인하는 일체의 시도에 대한 비난 등을 담보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

■ 넷째, 만일 일본 정부가 주장하듯이, ‘2015년 합의’가 한국의 국가기관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원하지 않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게 하고, 전 세계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설치 저지 / 철거 요구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극단적으로 불합리한

계약으로서 애당초 무효임.

- 2021년 2월 23일에 한국의 외교 2차관이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서 분쟁 관련 성폭력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꼽으며, “우리가 다뤄야 할 시급한 문제는 분쟁 속에서의, 그리고 분쟁 이후의 성폭력”이며, “현재와 미래세대는 2차 세계대전의 이른바 ‘위안부’ 희생자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부터 귀중한 교훈을 배워야 한다. ‘위안부’의 비극은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다뤄져야 하며 분쟁에서 이런 중대한 인권 침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합의 위반’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했음.

■ 다섯째, 일본 정부의 ‘종군’이라는 용어의 폐기에 의해 ‘2015 합의’의 대상 자체가 불명확하게 되었음.

- ‘2015 합의’에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라는 용어를, 한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했음.
- 그런데 2021년 4월 27일 일본 정부는 ‘종군’이라는 용어가 강제연행이나 군과의 연관이 있었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이유로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각의결정함.
- 한국과 국제사회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자발성’을 함의한다는 이유로 폐기한 ‘종군’이라는 용어를 일본 정부는 정반대의 이유 즉 일본군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한 것임.
- 이로써 ‘2015 합의’에서 일본 정부가 사용한 ‘위안부’와 한국 정부가 사용한 ‘일본군위안부’는 완전히 다른 대상이 됨으로써, ‘2015 합의’는 대상 자체조차 특정할 수 없는 ‘환상의 약속’이 되어버려 이미 파탄상태임.

## VIII. ‘강제연행’, ‘성노예’, ‘20만’ 아니다?

### 1. ‘강제연행’

■ 「코오노담화」가 인정했듯이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되었으면 강제연행된 것임.

■ ‘강제연행’ 부정은 비법적·비상식적임.

- ‘관현이 집에 쳐들어가 사람을 유괴하듯이 끌어갔다’라는 내용이 공문서에 실릴 가능성은 거의 없음. 게다가 일본은 패전 직후 공문서를 대량 소각했음.
- 일본의 공문서에 기술이 없다고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님.
- ‘관현이 집에 쳐들어가 사람을 유괴하듯이 끌어간’ 경우만 강제연행이라는 주장은 강제연행의 법적·상식적 의미에 반함. 그것은 아베의 일본이 발명해낸 일본에서만 통하는 어설픈 은어에 불과한 것임.

- 일본의 공문서에 의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안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가능함.
- 게다가 일본 재판소의 판결문에는 피해자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끌려갔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그 판결문은 일본의 공문서임.
- 일본 정부의 주장은 결국 ‘본인의 의사에 반해 끌려갔다’라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임. 이것이 명백한 2차 가해임은 더 말할 것도 없음.

■ 게다가 강제연행은 일본의 국가책임 성립의 요건도 아님.

- 「코오노담화」가 인정하듯이, 일본 정부와 군이 “위안소의 설치·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 관여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아래에서 이루어진 가혹한 것”이었음.
- 그것만으로 당시의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며, 그것만으로 일본의 국가책임이 발생한 것임.
- 그래서 일본 정부의 기도는 공허한 흠집내기에 불과한 것임.

## 2. ‘성노예’

■ 일본 정부는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성노예가 무엇인지, 성노예에 부합하는 사실은 무엇인지, 성노예에 반하는 사실은 무엇인지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일본 정부의 주장은 ‘그냥 성노예라는 표현이 싫다’라는 감정의 표현일 뿐임.

■ 일본군‘위안부’의 법적 실체는 ‘성노예’임.

- 아베 코오키(阿部浩己)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노예제의 요체는 사람에게 대한 지배이며, 여기에서의 지배란 사람의 자유 또는 자율성을 심대하게 박탈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도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배의 한 형태로서 허가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노예제의 본질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또 조약상의 정의로부터 명백한 것처럼, 노예제란 ‘지위 또는 상태’이며, 사람이 어떤 방법·수단·목적으로 그러한 지위 또는 상태에 이르렀는가라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강요를 당해 연행되어 온 경우라도 노예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노예가 아니다. 반대로 자발적으로 이동해서 온 사람이라도 노예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면 노예가 된다. 노예제에 관한 이러한 인식은, 노예제조약 기초의 시점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국제법상 전혀 변함이 없다.”
- “자유 또는 자율성을 심대하게 박탈”당한 상태에서 성적 착취를 당한 일본군‘위안부’는 성노예였음.
- 국제기구의 수많은 보고서와 결의들이 ‘성노예’라고 밝히고 있음.
- ‘성노예가 아니다’라는 주장 역시 아베의 일본이 발명해낸 일본에서만 통하는 어설픈 궤변에 불과한 것임.

### 3. '20만'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총수에 관해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임.
- 하지만 그 총수는 일본 정부가 밝힐 수 있는 것이며, 일본 정부가 밝혀야 하는 것임.
- 그 총수가 20만 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책임이 소멸되거나 경감되는 것은 아님.
- 단 한 사람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책임은 따르는 것.
-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수는 17명이며, 그중 북한이 인정한 수는 13명 임.

## IX. 한국 법원의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다?

### ■ 2021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김정곤) 판결

#### 1. 국가면제 적용 배제

- “국가면제 이론은 항구적이고 고정적인 가치가 아니다.”
- “피고가 된 국가가 국제공동체의 보편적인 가치를 파괴하고 반인권적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가하였을 경우까지도 이에 대하여 최종적 수단으로 선택된 민사 소송에서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 . . 불합리하고 부당”하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의 해석에는 예외를 허용해야 함이 상당하다.”

#### 2. 반인도적 범죄

- “이 사건 행위는 당시 일본제국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3. 「청구권협정」 및 '2015 합의'에 의한 미해결

- “청구권협정은 일본제국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원고들이 청구하는 “일본제국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위자료”는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다.
- ‘2015년 합의’는 “정치적 합의가 있었음을 선언하는 데 그친 것”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합의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 판결의 의의

#### 1. 국제법의 진화에 기여

- 19세기의 절대면제주의에서 시작하여, 20세기의 사법행위 예외를 인정한 제한면제주의를

거쳐, 21세기에 인권 예외로 확산되고 있는, 국가면제라는 관습국제법의 진화과정에 적극 동참한 선도적인 판결의 하나임.

- 국가 중심의 세계관에서 인권 중심의 세계관으로 나아가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반영한 판결임.

## 2.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법적 판단 반영

- 1990년대 초부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전 세계 시민들이 요구해왔고, 유엔 인권기구의 각종 보고서, '2000년 일본군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의 판결, 전 세계 각국 의회와 지방자치단체들의 결의를 통해 확인된 국제사회의 법적 상식을 반영한 판결임.

## 3. 한일 과거청산에 대한 대한민국의 총체적 법적 판단 반영

- 거슬러 올라가면 1900년대 초부터 주장되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들과 1948년 및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서 확인되었고, 1965년 이래 한국 정부의 입장표명과 사법부의 판결·결정들을 통해 구체화된 일련의 법적 판단을 반영한 판결임.

### ■ 국제법 위반?

- 1월 8일 판결은 '국가면제'라는 관습국제법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제한한 것이므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 아님.
- 일본 정부의 주장은, 19세기의 절대면제주의를 국가면제의 전부인 양 절대시하며, 국가면제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국제법 위반/준수의 이분법으로 치환한 부당한 논점 바꿔치기임.
- 소장의 송달을 거부하고, 소송에 일절 응하지 않은 일본 정부가 부당하게 판결을 비난하며, 3권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행정부가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 X. '소녀상 안 된다'?

■ 전 소녀상 설치 저지 / 철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집착은 가히 편집증적임. 최근의 사례만으로도 베를린 소녀상에 대한 공격과 아르헨티나 소녀상 설치 저지 기도, 독일 카셀대학 소녀상 철거 등.

- 키시다 수상은 솔츠 독일 수상에게 직접 베를린 소녀상의 철거를 요구했고, 아르헨티나 대통령에게는 IMF의 지원을 못받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했다고 함.

■ 소녀상(평화비)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상징이자 보편적 여성인권을 위한 다짐의 상징인 자그마한 소녀의 동상임.

■ 그 작은 상징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 철거하도록 하기 위해 일본의 수상, 외무대신, 국회의원, 재외기관, 지자체 등이 실로 '거국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움.

■ 소녀상 공격은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체를 부정한다고 전제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

지 않는 것임.

### XI. '사죄할 만큼 했다'?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에 대한 요구는 그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 표명에 대한 요구임.
-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건이 문제가 될 때마다 거듭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당연함.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에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정부가 일본계 미국인을 강제 수용했던 역사에 대해 “고통을 겪은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연방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재확인하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한다”라고 밝혔음. 미국의 공식 사죄는 1988년에 레이건 전 대통령이 시작한 이래 이어지고 있음.
- “위안부 문제의 '위'자도 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체를 부정한다고 전제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임.

### XII. 맺음말

- 「코오노담화」는 일정한 진전이었으나 명백한 한계를 가지는 것이기도 함.
- 「코오노담화」는 그 발표 이후 30년에 걸친 일본 정부에 의한 형해화의 결과, 더 이상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없게 되었음.
- 일본 정부에 의한 「코오노담화」 형해화의 결과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부정임.

범죄인정	×	
공식사죄	×	
법적 배상	×	
진실규명	×	
역사교육	×	기재 → 삭제
추모사업	×	
책임자 처벌	×	

- ‘강제동원’ 지우기에 열심인 윤석열 정부와 키시다 정부의 다음 목표는 일본군‘위안부’ 지우기가 될 것임. 구체적으로는 ‘2015 합의’가 ‘공식합의’라고 내세우며, ‘화해·치유재단’ 해산 후 잔금과 문재인 정부가 양성평등기금에 출연해 둔 10억엔 상당의 금원으로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에서, 그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덮기’에 불과함.
- 「코오노담화」 30년에 우선 해야 할 일은,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분열증적 궤변들을 거두고, 「코오노담화」에서 인정한 것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것임. 그러고서 비로소 한일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해 무언가를 함께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

**\* 참고문헌 \***

김창록, 「2000년 여성국제법정의 맥락 :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법적 책임」, 양현아·김수아 편 / 일본군‘위안부’연구회 기획, 『2000년 여성국제법정 - 전쟁의 아시아를 여성과 식민주의의 시각에서 불러내다』, 경인문화사, 2021

김창록, 「‘램지어 사태’ - 일본군‘위안부’ 부정론의 추가 사례」, 『역사비평』 135, 2021 여름

남상구, 「일본 정부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역사인식과 정책 변화」, 『한일관계사연구』 58, 2017

남상구, 「고노 담화 수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49, 2014

강성현, 『탈진실의 시대, 역사 부정을 묻는다 - '반일 종족주의' 현상 비판』, 푸른역사, 2020

김창록 외, 『2015 ‘위안부’ 합의 이대로는 안 된다』, 경인문화사, 2016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吉見義明, 「『河野談話』をどう考えるかーその意義と問題点」, 西野瑠美子他2編, 『「慰安婦」バッシングを越えてー「河野談話」と日本の責任』, 大月書店, 2013

山本健太郎, 「従軍慰安婦問題の経緯 : 河野談話をめぐる動きを中心に」, 『レファレンス』 63-9, 2013

## [토론문] 코오노담화 검증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

이영채(일본게센여학원대학)

[코오노담화 30주년]의 연구회에 참가하게 되어서 영광이기도 하고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토론자로서 스스로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토론을 받아들인 것은 최근의 한일관계의 역주행과 폭주에 대한 우려, 김창록 선생님의 발표문(이하 발표문)에 대한 관심과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지도를 받고 싶다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다.

이 발표문은 코오노담화의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과제, 그리고 현재의 상황 및 전망까지 전반적인 문제를 포괄하는 매우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논문이다. 이 논문에 대해서 특별히 진전된 문제제기를 할 정도로 지식이 있지는 않다. 그 대신, 일본에 있는 입장에서 아베 내각의 코오노담화 검증이 기시다 수상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기시다 수상이 향후 일본군위안부문제와 한일위안부합의(2015년)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망을 해 보고자 한다.

이 발표문은 코오노담화의 배경 및 의의, 그리고 한계점에 대해서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코오노담화」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사죄와 진실규명 및 역사교육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아 틀림이 없음.

-다만, 일본 정부와 군의 ‘관여’라는 애매하고 불충분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가해의 주체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배상, 추모사업,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또한 코오노담화 발표이후에도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의 도의적 책임은 지겠지만,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일관된 모습을 보여왔으며, 아베내각시기에는 [코오노담화]의 도의적 책임까지도 부정하려는 [코오노담화 검증]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검증작업의 결과가 전후60년 [아베담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1. 강제성의 부정과 [한일타협의 산물]로 간주하는 코오노담화 검증의 재검증의 필요성

코오노담화 이전에 미야자와 수상시기 가토관방장관의 담화(92년1월13일)가 있었다.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해서 첫 공식 사죄를 표명한 담화이다. 미야자와 수상의 방한과 노태우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사죄]의 표현을 한이후, 일본정부는 동년7월 가토관방장관은 조사결과에 바탕하여 위안부문제에 대해서 [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사죄하였지만, [강제동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93년의 코오노담화도 위안부시설의 모집 및 운영에 있어서 군의 [관여]는 인정하고 있지만, 모집을 담당한 민간업자

를 포함해서 [강제동원]은 일관되게 부정하고 있다. 특히 아베수상이 이야기한 협의의 강제성(폭력에 의한 강제동원)은 없었고 증명하는 문건도 없다는 입장이다.

2014년 아베수상의 코오노담화에 대해 [수정은 하지 않지만 검증은 한다]라는 입장도 결국은 강제동원을 부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인다. 코오노담화의 검증작업에 대한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일본의 보수우파는 2014년2월2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다마 히로시(山田宏, 당시 일본유신회의원, 현 자민당의원) 의원이 이시하라 노부오(石原信雄, 1926-2013)전 관방장관에 대해서 코오노담화의 작성 배경에 대한 질의를 [역사적인 검증]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코오노담화의 실질적인 작성 책임자로 불리는 이시하라를 증인으로 세워서, 코오노담화의 작성배경에 대해서 질의한다. 이시하라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드러내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정부가 강제동원되었다는 표현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한국정부가 제안한16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원안을 작성하였다. 하지만, [위안부 당사자가 일본에는 없었기에 증언의 검증은 할 수 없었다]. 담화문은 [한국정부와 막판 조정]을 하여 발표하였고, 한일관계개선을 위한 [일본정부의 선의]가 있었다 라고 증언하게 한다.

(동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ohNXzimXNs>)

야마다의원은 코오노담화는 [한일정부의 타협의 산물]이고, 중요한 외교문건에 [강제성이 증명되지 않은 채], 한국측의 편견이 들어간 [증언]에 의해서만 작성되었다며 코오노담화의 작성배경의 문제점과 담화의 신빙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한다. 또한, 아리무라 나오코(有村治子, 자민당 의원)는 동년 4월2일 참의원통치기구조사회에 이시하라를 다시 증언으로 불러서 2월의 [일본정부의 선의]의 발언에 대해서 배경을 확인하면서 [강제성의 확인이 없었다]라는 이시하라의 발언을 다시 확정한다. 아리무라의 의원은 일본회의 사무차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야마다 의원도 일본회의 멤버이고, 2016년 자민당으로 이적했고, 아베수상의 추천에 의해서 자민당 비례로 당선되었다.

일본유신회의 제안으로 아베내각과 스가관방장관은 2014년2월28일 코오노담화 검증을 위한 팀 설치를 결정하였다. 이후 6월20일 코오노담화 검증결과를 공식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정부의 의향 및 요망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였다

(「韓国政府の意向・要望について受け入れられるものは受け入れ」)

검증조사나 다른 증언과의 비교는 하지 않았다

(「裏付け調査や他の証言との比較は行われなかった」)

아베내각은 결국 코오노담화의 [수정]은 하지 않았지만, [검증]을 통해 담화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하였고, 이 토론문에서 지적하듯이 [「코오노담화」 형해화 = 변죽 울리기, 주변 허물기, 용어 뒤틀기, 억지 부리기]가 진행되었다. 일본우익들은 코오노담화는 [정치문건]이었으며, [역사적인 산물]이 아닌 [정치타협에 의한 정치문건]이었다는 것이다.

코오노담화의 검증작업은 이후 일본의 미디어와 사회전체의 역사인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고 본다. 아베내각의 코오노담화 검증작업의 배경과 경과에 대한 재검증을 통해서 이 작업의 [정치적 의도]를 밝혀내는 것은 일본의 역사인식을 재구축하는데 중요한 프로세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외무장관이었던 기시다 후미오 수상의 역사인식도 이 시기의 일본정부의 검증작업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2. 기시다 수상의 코오노담화 및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역사인식

발표문이 지적하고 있듯이, 코오노담화는 [그 발표 이후 30년에 걸친 일본 정부에 의한 형해화의 결과, 더 이상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없게 되었고], [일본 정부에 의한 「코오노담화」 형해화의 결과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부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시다수상은 2021년12월9일, 중의원 및 참의원 양원의 본회의에서의 대표질문에서 위안부문제로 구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한 코오노담화에 대해서 [수정은 생각하고 있지않다]고 말하였다(산케이신문, 2021년12월9일). 하지만 이 발언속에서는 기시다 수상이 코오노담화의 무엇을 계승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기시다 내각의 역사인식을 공식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회에서의 질의와 발언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021년10월8일 나다니야 마사요시(那谷屋 正義, 전 입헌민주당)의원이 참의원에서 기시다수상에서 질의를 보냈다(제205회국회, 질의서21번). 기시다 수상은 답변서(10월19일)에서 [코오노담화를 계승]하고 있다는 답변과 함께, 무라야마담화, 아시아여성기금, 한일위안부합의(2015년)에 대한 인식을 묻는 답변에 대해서는 2015년9월25일 야마모토 타로(레이와)의원의 질문(제189회국회, 질의서325번)에 대한 아베 전 수상의 답변(10월6일)으로 대체하고 있다.

야마모토 타로 의원은 아베수상의 전후50년 담화에 대해서 1)일본의 전쟁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포함한 역대내각의 [무라야마 담화]와 [고이즈미담화](전후50년 담화)가 포함되는가를 질문하였고, 2)통렬한 반성과 사죄에 [식민지 지배와 침략]이 포함되는가, 그리고 3)전후50년 담화속에 [종군 위안부 문제]가 포함되는가, 에 대해서 질의하였다.

여기에 대해 아베수상은 [통렬한 반성과 사죄]는 무라야마담화와 고이즈미 담화에 포함되어 있으며, 역대 내각은 이것을 계승하고 있다고 답변하면서도, 아베담화는 [전체로서의 멧세지가 중요하며, 일부만을 떼어서 논의하는 것은 폭넓은 국민들과 멧세지를 공유하는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여하튼 아베 내각으로서 무라야마 담화 및 고이즈미 담화에 대해서 전체로서 계승하고 있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즉, 아베수상의 답변은 이미 정당성이 없는 코오노담화에 기반한 역사인식은 재수정되어야 하면, [통렬한 반성과 사죄]는 두 번 다시 말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수의 아베 파와 강경보수파의 지지기반속에 서 있는 기시다 수상의 역사인식 또한, 이러한 아베내각의 [전체로서의 계승]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역사인식은 보수야당이나 리버럴 야당으로 혹시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 발표문이 지적하듯이 [‘강제동원’ 지우기에 열심인 윤석열 정부와 키시다 정부의 다음 목표는 일본군‘위안부’ 지우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코오노담화] 30년에 우선 해야 할 일은,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분열증적 궤변들을 거두고, 「코오노담화」에서 인정한 것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일본이 [물컵의 절반]을 채우기를 진정 기대한다면 먼저 그들이 코오노담화의 본질을 인정하는가, 그 본질을 형해화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기시다 수상이 한국을 방문하기 직전 일본의 어느 보수평론가는 [외교에 촌탁은 있어서는 안된다. 제2의 코오노담화를 만들지마라]고 경고의 글을 올렸다. 그들에게 코오노담화30년은 [한국에 대한 촌탁] 그 이상의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코오노담화를 이처럼 형해화하려는 보수우익들의 움직임을 저지하지 않고서 일본의 역사인식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코오노 담화30년을 맞이하여 코오나 담화 검증 작업의 [재검증]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 아베 정부의 고노 담화에 대한 검증을 재검증<sup>1)</sup>

남상구(동북아역사재단)

## 1. 고노 담화 발표 경위

- 1960년대~1980년대. 일본 국회에서 일본인 전쟁협력자 원호와 한국인 강제동원 문제의 하나로 논의
  - 1968.4.26. 중의원 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고토 도시오(後藤俊男) 일본사회당 의원은 “어떤 때는 병사들을 육체적으로 격려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고생을 한 위안부에 대해”라고, 지쓰모토 히로쓰구(実本博次) 후생성 원호국장은 “현실적으로는 무언가 상당히 전선의 장병의 사기를 고무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군이 상당히 장려했던 것은 아니냐고 생각합니다.”고 답변
  - 1985.2.14.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사토 간쥬(佐藤觀樹) 일본사회당 의원은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의 한국인 강제동원 관련 발언과 활동을 소개하면서 “요시다 씨의 고백에서는 약 6천 명을 조선반도에서 징용이라는 명목으로 끌고 왔는데 그중에는 950명이 여자정신대원으로 이른바 남방에 보내는 위안부로 끌고 왔다는 고백이 있습니다”고 발언
- 1990.5.18. 여성단체연합회 등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5월 24일 방일 예정인 노태우 대통령에게 “전쟁에 대한 일본 당국의 사과와 징용, 원폭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 (중략) 일본의 과거의 범죄행위 중 특히 묻혀 있는 ‘정신대’ 문제에 대한 일본 당국의 진상규명, 사죄와 배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 1990.5.25. 노태우 대통령 방일 중에 열린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 최호중 외무장관은 일본 정부에게 강제 징병 또는 징용된 한국인 명단 공개를 요구했고 일본 정부는 28일 의회에서 명단을 조사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
- 1990.6.6.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사회당의 모토오카 쇼지(本岡昭次) 의원이 한국인 강제동원 조사와 관련하여 “강제연행 가운데 종군위안부라는 형태로 연행되었다고 하는 사실”도 있냐고 질의
  - 이에 대해 시미즈 쓰다오(清水傳雄) 노동성 직업안전국장은 “종군위안부라는 것에 대해 오래된 사람의 이야기 등을 종합해서 들으면, 역시 민간업자가 그러한 분들을 군과 함께 데리고 다녔다던가, 그러한 상황 이었던 것으로, 이러한 실태에 대해 저희들로서는 조사하여 결과를 내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 불가능합니다”고 답변
  - 강제연행 범주에 대한 질문에는 “강제연행, 사실상의 단어의 문제로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별개 문제로 하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가권력에 의해 동원된 그러한 상황의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고 답변
- 1991.4.1.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모토오카 쇼지 의원이 “정부가 관여하고 군이 관여해서 여자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조선의 여성을 종군위안부로 강제로 남방 쪽으로 연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저는 틀림없는 사실이라

1) 이 글은 남상구의 「고노 담화 수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한일관계사연구 제49집』, 2014)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역사인식과 정책 변화」(『한일관계사연구 제58집』, 2017)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고 생각합니다”며, “각 성청에 대해 적극적 지도력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요청
- 이에 대해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 총리는 “과거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조사를 하고 진실을 밝혀 제공해야 할 것은 제공해야 한다”고 답변
  - 동년 8월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와카바야시 유키노리(若林之矩) 노동성 직업안정국장은 노동본성에 대해 여러 조사를 했고 근로국과 근로동원서 근무자를 상대로 조사를 했으나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고 답변
- 1991.12.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3명을 포함한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35명이 도쿄지방법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 원고는 일본 정부와 군이 위안부 연행과 위안소 유지 및 관리에 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주장
  - 1991.12.10. 한국 외무부는 가와시마 준(川島純) 주한일본공사를 불러 ‘한국인 정신대 문제’에 관한 진상규명 조치와 정신대 명부가 발견되는 대로 한국 정부에 전달해 줄 것을 공식으로 요청
    - 이에 대해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관방장관은 12월 11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관여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조사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법률과 조약의 문제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마음에 상처를 남긴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하겠다”고 발언
  - 1991.12.12. 일본 정부는 내각관방 주재로 개최된 관계성청회의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자료조사를 지시, 내각 외정심의실 조정하에 관계 가능성이 있는 성청에서 조사 시작
    - 1992.1.7. 방위연구소에서 군의 관여를 보여주는 문서가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언론에 공개는 하지 않음.
  - 1992.1.11. 아사히신문은 1면에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교수가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에서 발견한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와 ‘위안부’ 모집에 관여한 자료를 공개
    - 1월 13일 가토 관방장관은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담화’를 발표하여 일본군위안부 모집과 위안소 경영 등에 일본군이 어떤 형태로 관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
  - 1992.1.17. 한국을 방문한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총리는 노태우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모집 등에서 군이 어떤 형태로 관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에게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고 “정부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계속해서 조사”하겠다고 약속
  - 1992.7.6. 가토 관방장관은 제1차 조사 결과를 ‘한반도 출신자의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내각관방 장관 담화’를 통해 발표
    - 가토 담화는 “위안소 설치, 위안부 모집 담당자에 대한 관리, 위안시설의 설치 및 증강, 위안소 경영 및 감독, 위안소 및 위안부의 위생관리, 위안소 관계자의 신분증명서 발급 등에 관해 정부가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표명
    - 담화의 제목은 ‘한반도 출신’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나, 중국, 타이완, 필리핀, 인도네시아 여성들도 피해를 봤음을 인정하고 북한을 제외한 각국 정부에 조사 결과의 개요를 전달
    - 기자회견에 가토 관방장관은 조선인 여성의 ‘강제징용’을 보여주는 자료는 없었다는 질문에 “모집 방법에

관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변

- 한국 정부는 7월 6일 외무부 대변인 논평을 발표하여 일본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가 정신대문제의 전모를 밝히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일본 정부의 철저한 진상규명 노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주장
- 가토 담화 발표 이후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
  - 1992년 10월 하순 이시하라 노부오(石原信雄) 관방부장관 주도하에 자료조사 범위 확대, 위안부 대표자(수명)와의 면담실시 등 추가 조치를 하여 결론을 내고, ‘강제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정하기 어렵지만, ‘일부에 강제성의 요소도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식의 인식을 표명하는 방침을 한국 측에 전달
  - 1993년 2월에서 3월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방침으로 ‘진상규명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결론과 맞바꾸어 한국 정부에게 무언가의 조치 실시 받아들여지게 하는 패키지·딜로 본 건 해결을 도모한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타진하기로 결정
- 1993.3.13. 김영삼 대통령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물질적 보상 문제는 필요하지 않다면서 그런 점에서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에 접근할 것”이라고 표명
- 1993.4.1. 한일 외상회담에서 와타나베 미치오(渡辺美智雄) 외상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한·일 양국 국민의 마음에 응어리가 남지 않도록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강제연행 사실을 인정,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싶다”고 발언
  - 한승주 외무부장은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진상을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
- 1993.6.29. 한승주 외무부장은 무토 가문(武藤嘉文) 외상과의 회담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3대 원칙으로 “연행의 강제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위안부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며, 위안부 문제를 교훈으로 삼겠다는 것을 표명할 것”을 제시
  - 김영삼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무토 외상을 접견하고 “우리는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 배상을 원치 않지만, 역사의 진실은 밝혀야 한다”고 주장
  - ※ 고노 담화 발표 후 요미우리신문(1993.8.5.)은 “‘김 대통령의 심정에 조사보고로 응답을 하고 싶다’(정부통)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며, 김영삼 정부 정책이 고노 담화 발표에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
- 1993.8.4.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은 담화를 통해 제2차 조사결과를 발표

## 2. 고노 담화 내용과 평가

### 2-1. 조사 범위

- 일본 정부는 가토 담화 이후 일본 내 관계기관의 자료뿐 아니라 국외 관계기관 자료 조사, 국내 관계자 26명 구술조사(구 일본군 관계자 12명, 조선총독부 관계자 5명, 위안소 경영자 1명, 구 후생성 관계자 2명, 연구자 3명, 집필자 3명), 피해자 16명 구술조사(1993.7.24~26) 등을 실시

- 국립공문서관 21건, 국회도서관 17건, 미국 국립공문서관 19건의 새로운 자료 발굴

## 2-2. 핵심 내용

○ 고노 담화의 요지는

- ① 장기간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위안소가 설치되고, 많은 수의 위안부가 존재했는데,
- ②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설치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군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했고,
- ③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담당했는데, 이 경우에도 감언, 강압 등에 의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 위안부 모집의 주체가 일본군이고, 일본 정부가 모집과 이송에 조직적으로 협력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음.

- ④ 관현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일도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졌고,

※ 고노 담화 작성과정에서 네덜란드 여성을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한 일본군 장교 12명이 네덜란드 헤이그 군사 법정에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 즉 혐의의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아사히 신문, 1992.7.21.) 이 사례는 군과 관현에 의한 강제연행을 증명하는 문서로는 인용하지 않았음.

- ⑤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하에서 처참한 것이었으며,
- ⑥ 위안부 출신지는 일본을 별도로 한다면, 한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당시 한반도가 일본 통치 하에 있었으며,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한 것으로,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실시되었고,
- ⑦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본 건은 당시의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낸 문제로 사죄와 반성을 표명

○ 고노 관방장관은 담화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강제연행 사실이 있었다고 인식하느냐는 질문에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 그렇다”고 답변

- 공문서에서 강제연행을 뒷받침하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강제라고 하는 것에는 물리적인 강제도 있고 정신적인 강제도 있다며 “정신적인 강제라는 것은 관현 측의 기록에는 남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러한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충분히 조사”했고, 전 종군위안부에게 청취한 증언과 전 위안소 경영자 측의 증언을 통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끌려온 사례가 많다”, “모집된 후의 생활도 본인의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것도 조사에서 확실해 졌다”고 발언

○ 2014.6.2. 제12차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채택한 '일본 정부에 대한 제언'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인정하라고 요구한 사실과 기본적으로 일치

1. 다음과 같은 사실과 책임을 인정할 것.

- 일본 정부 및 일본군이 군 시설로 위안소를 입안·설치하고, 관리·통제했다는 점
-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위안부·성노예'가 되었고, 위안소 등에서 강제적인 상황에 놓였었다는 점

- 일본군에게 성폭력을 당한 식민지, 점령지, 일본 여성들의 피해는 각각 다른 양태이며, 또한 그 피해가 막대했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
- 일본군'위안부'제도는 당시의 여러 국내법·국제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였다는 점

## 2-3. 평가(발표 직후)

### 2-3-1. 일본 정부

- 고노 담화 발표 이후 일본의 역대 정권은 동 담화가 일본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라는 것을 인정함.
- 다만, 1996년 6월 18일 하시모토(橋本龍太郎) 내각의 이케다 유키히코(池田行彦) 외상이 국회에서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관방장관 담화에서 위안부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것을 담당했지만, 그 경우에도 감언, 강압 등 본의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이 있고 더욱이 관헌 등이 직접 여기에 가담한 일도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고 언급한 것을 제외하면, 구체적인 언급 없이 정권 차원에서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취지만을 언급해 왔음.

### 2-3-2. 한국 정부

- 외무부 대변인 논평(8.4)을 통해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과·반성의 뜻을 표명한 점을 높이 평가

### 2-3-3. 시민단체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은 일본의 “군·관·민이 공동으로 위안부 **강제모집에 나선 명백한 자료들이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관여해 감언·강압으로 위안부를 모집한 사례가 많았다”는 식으로 위안부 **강제연행의 책임을 교묘하게 민간업자들에게 떠넘겼다**”며, “**전쟁범죄라는 본질을 교묘히 회피한 발표**”라고 비판(한겨레신문, 1993.8.5)

### 2-3-4. 일본 언론

- 산케이신문을 제외한 모든 주요 일간지의 논조도 이와 유사했는데, 담화 발표 당시 강제성에 대한 인식은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의 강제성, 즉 본인에 의사에 반하는 동원과 위안소에서 강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언론도 이러한 인식을 수용했다고 할 수 있음.
- 요미우리신문(1993.8.5)은 “‘강제성’을 인정한 ‘위안부’ 조사”라는 사설에서 “넓은 의미라고는 하나 ‘강제성’이 있었던 이상, 그 뜻에 반하여 위안부가 되었던 여성들의 고통과 치욕은 헤아리기 어렵다. 그녀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사실을 공표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고 주장

### 3. 고노 담화에 대한 공격

#### 3-1. 경위

- 1996년 2월 구마라스와미 유엔 특별 보고관이 유엔 인권위원회에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특별 보고서’를 제출하고, 6월 검정결과가 발표된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7종 전부에 일본군 ‘위안부’가 기술된 것을 계기로 고노 담화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 비판의 요지는 일본 정부가 조사한 자료 중에는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모집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없었다는 것임.
  - 1997.1.30.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가타야마 도라노스케(片山虎之助) 자민당 의원의 강제연행과 강제모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는지를 묻는 질의에, 히라바야시 히로시(平林博) 관방 외정심의실장은 “정부로서는 2차례에 걸쳐 조사했습니다. 일부 자료, 일부 증언이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강제성 문제입니다만, 정부가 조사한 문서 중에는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모집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일정한 강제성이 있었다는 것으로 앞에서 지적하신 관방장관 담화의 표현이 되었다”라고 답변
  - 고노 전 관방장관도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1997.3.31.)에서 “‘강제연행’을 ‘정부가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 폭력적으로 여성을 끌고 갔다’고 좁게 정의한다면 ‘그것을 입증하는 문서는 없었다’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되었다’는 것을 ‘강제성’이라고 정의한다면 위안부 모집, 이송, 관리 등에서 ‘강제성 사례가 다수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넓은 의미에서의 ‘강제성’을 인정하였다고 밝힘.
- 고노 담화가 다시 논란이 된 것은 아베 총리가 2007년 3월 1일 동 담화에 대해 “당초 정의된 강제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고노 담화 수정 필요성에 대해 “정의를 크게 바뀐 것을 전제로 생각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 계기.
  - 아베 총리는 3월 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강제성에 대해 “이른바 관헌이 집에 들어가 사람을 유괴하듯이 끌고 간다고 하는 그런 강제성은 없었다”며, 이 문제의 발단은 아사히신문이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의 위안부 사냥을 보도한 것으로,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증명하는 증언은 없다고 주장.
  - 다만 민간업자가 사실상 강제를 한 사례는 있다는 사실, 즉 “광의의 해석에서 강제성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
  - 아베 총리는 미국 정부의 우려와 미국 언론의 비판에 직면하자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3월 16일 고노 담화 작성 시점까지는 “정부가 발견한 자료 가운데는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답변서를 각의결정
  - 아베 총리는 4월 3일 부시(George Walker Bush) 대통령과 전화 회담, 뉴스위크와의 인터뷰 등에서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베 총리의 이러한 대응은 미국 하원을 설득하지 못했고 7월 30일 만장일치로 하원에서 결의 채택
- ※ 아베 신조 의원은 1997년 5월 27일 중의원 결산위원회 제2분과회에서 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주장했음.  
첫째, “이른바 종군위안부라는 것, 이 강제라는 측면이 없으면 특기(特記)할 필요가 없는데, 이 강제성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을 검증할 문서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예산위원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고타마(小山) 의원, 가타야마(片山) 의원의 질문에서, 외정심의실장의 답변 등을 통해 명확해 졌습니다.”<sup>2)</sup>라고 한 발언에 나타나 있듯이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강제성인데, 이를 입증할 문서는 없다는 것임.

둘째, 강제를 입증할 문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를 인정한 것은 16명 피해자 증언 때문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교적 배려에 따른 것이었고 이것이 관방장관담화로 연계되었다는 것임.

셋째, “그(주: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에 의해 쿠마라스와미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대부분의 근거는 이 요시다 세이지라는 인물의 책 혹은 증언에 의한 것이다. 그 근거가 이미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방장관 담화는 살아있고, 그리고 교과서에마저 기술된 것입니다”<sup>3)</sup>라는 발언에 나타나 있듯이 요시다 세이지의 허위 증언을 근거로 한 유엔 보고서와 고노 담화는 신용할 수 없다는 것임.<sup>4)</sup> 아베 총리의 고노 담화에 대한 불신은 이러한 신념 위에서 만들어진 확고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3-2. 고노 담화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초래

- 2007년 미국 하원을 비롯한 각국 의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아베 내각이 고노 담화를 부정하려 한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
  - “최근 일본의 공공 및 민간 관계자들은 위안부의 고통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지한 사과와 참회를 표명한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위안부’ 관련 담화를 희석시키거나 철회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미국 하원 결의안, 2007.7.30.)
  - “일본 정부는 1993년 고노 담화를 통해 위안부의 운명을 진심으로 시인하고, 피해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본 담화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시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지난 3월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성명을 철회하고 올 초 동일 주제에 관하여 일본 중의원 구성원이 워싱턴포스트에 광고를 게재한 점 등에서 드러나듯이, 일본 정부와 일본 의회 구성원은 여러 차례 이와는 거리가 있는 행보를 보였던 점을 인식하고”(네덜란드 의회 결의안, 2007.11.8.)
  - “일부 일본의 관료들은 ‘위안부’ 들의 고통에 대해 정부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1993년 ‘위안부’ 관련 담화를 희석시키고 철회하기 위한 유감스런 의도를 최근 표명해 왔다. 따라서 캐나다 정부는 1993년 고노 담화의 유감 표명을 후퇴시키는 어떠한 발언도 중지할 것”(캐나다 의회 결의안, 2007.11.28.)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4년 7월 25일 일본 심사 최종의견에서 ‘공인에 의한 것과 체약국의 애매모호한 태도에 의해 조장된 것을 포함해, ‘위안부’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공격에 의해 그녀들이 또 다시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한다’며, 일본 정부가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사건을 부정하는 모든 시도를 비난’해야 한다고 권고

2) 일본 국회 회의록 검색시스템(<http://kokkai.ndl.go.jp/>)

3) 상동

4) 요시다 세이지 증언이 고노 담화가 강제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주장은 2014년 5월 20일 산케이신문(인터넷판) 보도에도 반영되어 있다. 산케이신문은 고노 담화 작성 당시 일본 정부가 요시다 세이지 증언을 청취했다는 사실을 들어 “사실(史實)과 사실(事實)관계에 기초하지 않는 ‘강제연행설’의 원점이 된 2명의 증언에 정부가 영향을 받아, 고노 담화의 강제성 인정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 4. 아베 정권의 고노 담화 재검증

### 4-1. 고노 담화 수정론 대두

- 고노 담화 수정론의 발단은 2012년 9월 15일 자민당 총재선거 토론회에서 아베 신조 후보자가 ‘고노 담화로 인해 일본군이 마치 여성들을 유괴해 강제로 위안부로 삼았다는 불명예를 일본이 짊어지었는데, (아베 1차 내각에서)고노 담화를 수정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 계기가 됨.
  - 2012년 12월 출범한 아베 2차 내각은 토머스 시퍼 전 주일 미국대사가 고노 담화 수정이 일본의 국익을 해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미국이 담화 수정에 우려를 표명하자, 2013년 5월 7일 스가 관방장관이 담화의 수정을 포함한 재검토를 거론한 적이 없다고 발언하는 등 한 발짝 물러섰음.<sup>5)</sup>
- 하지만 산케이신문이 2013년 10월 16일 고노 담화 작성 당시 증언 청취를 했던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16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담화 수정론이 탄력을 받게 됨.
  - 산케이신문은 피해자 16명의 증언이 고노 담화에서 강제성을 인정한 근거였는데, 그 증언이 신뢰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증언을 뒷받침하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함.<sup>6)</sup>
  - 피해자 16명의 증언이 신뢰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고노 담화에서 강제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주장은 1997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로 전제로 한 것이었고 그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고노 담화에 대한 공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사 결과가 산케이신문을 통해 공개되고 담화 수정을 요구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된 것임.
- 산케이신문의 보도를 이용하여 고노 담화 수정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정당은 일본유신회였음. 일본유신회는 2013년 11월 고노 담화 수정을 목적으로 하는 ‘역사문제 검증 프로젝트 팀(PT)’을 설립하고 당 차원에서 고노 담화 수정 캠페인을 벌였음.
  - 일본유신회의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의원(중의원)은 “현재 한국 정부는 여러 외국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위안부 문제’를 일러바치는 외교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위안부상’이 설치되는 등 우리나라의 명예가 현저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제적으로는 강제연행을 인정한 것 같은 1993년 8월 ‘고노 관방장관 담화’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고 주장.<sup>7)</sup>
- 2014년 2월 20일에는 일본유신회의 야마다 히로시(山田宏) 의원(중의원) 요구로 고노 담화를 만드는데 참여한 이시하라 노부오(石原信雄) 전 관방 부(副)장관이 국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 이시하라 씨는 피해자 16명 증언의 사실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조사하지 않았으며, 담화의 문안을 한일 양국 정부가 사전에 협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 동 국회에서 스가 관방장관은 고노 담화를 재검증해야 한다는 야마다 히로시 의원의 질문에 “학술적인 관점에서 더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
- 즉 일본 정부가 실시한 고노 담화 검증은 산케이신문과 일본유신회의 고노 담화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 의해

5) 『동아일보』(인터넷판) 2013.5.8

6) 조사보고서의 상세한 내용이 월간지 『正論』(2013.12월호)에 게재되어 있고, 월간지 『WILL』(2014.1월호)에는 증언자 14명의 실명이 공개되어 있다.

7) 나카야마 나리아키 홈페이지(<http://nakayamanariaki.com/modules/news/index.php?page=article&storyid=10>)

시작됨.

- 2024년 6월 20일, 고노 담화 작성 경위 등 검증팀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교섭 경위-고노 담화에서 아시아여성기금까지」(이하, 검증 보고서)를 발표

#### 4-2. 고노 담화 검증 결과 검토

##### 4-2-1. 검증팀 구성

- 검증팀 구성원은 5명으로 한일관계나 외교문제를 전공한 사람은 없음.
  - 사무국은 내각관방과 외무성으로 구성
- 일본군‘위안부’ 전공자도 하타 이쿠히코(秦郁彦) 1명뿐으로, 하타는 고노 담화와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해 왔음. ‘위안부’ 전공자가 1명뿐이라는 점과 하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보수파의 주장을 대변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가 검증팀에서 그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음
- 아시아여성기금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찬반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위 검증을 동 기금의 전 이 사에게 맡김
- 검증팀이 고노 담화의 작성 경위와 아시아여성기금사업 경위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데 적합한 구성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1> 검증팀 구성원 내역

성명	경력	비고
但木敬一	변호사(전 검찰총장)	
秋月弘子	아세아대학 국제관계학부 교수	국제법, 국제관계론 전공
有馬真喜子	전 아시아여성기금 이사, 저널리스트	
河野真理子	와세다대학 법학학술원 교수	국제법 전공
秦郁彦	역사학자	고노 담화에 비판적, 강제동원 부정

##### 4-2-2. 검증 대상

- 검증팀의 검증 대상은 ‘고노 담화 작성 경위’와 ‘한국에서의 아시아여성기금 사업 실시 경위’로 제한.
  - 검증 대상을 외교적 교섭으로 제한한 것이 고노 담화가 마치 역사적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한일 간 정치적 타협의 결과라는 오해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음.
  - 한국과의 교섭과정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 관계자나 관련 문서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지 않음.
- 검증 보고서의 검증 대상과 결과를 정리하면 <표2>.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2> 참조.
  - 검증 보고서는 크게 △고노 담화 작성 경위(1~14쪽), △한국에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사업 경위(14~21쪽)로 구성됨
  - 고노 담화 작성 경위는 △미야자와 총리 방한까지의 한일 교섭(~1992년 1월), △미야자와 총리 방한에서

가토 관방장관 발표까지의 한일 교섭(1992년 1월~1992년 7월), △가토 관방장관 발표에서 고노 관방장관 담화 전까지의 한일 교섭(1992년 7월~1993년 8월), △전 위안부 증언 청취 조사 경위, △고노 담화 문구 교섭으로 구성됨.

<표2> 검증 대상과 결과 개요

	검증 대상	검증 결과
1	위안부 문제 관련 한국정부와 교섭 경위(1991.12~1993.8)	초기부터 한국정부와 긴밀하게 교섭하면서 진상조사와 후속조치 강구
2	고노 담화 문안 조정 과정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 측과 문안을 조정 -한국 측의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는 거부
3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여부	일련의 조사를 통해서 이른바 ‘강제연행’은 확인할 수 없었음 -모든 사례가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것은 아니었으나 한반도가 일본 통치하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총체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라고 표현
4	피해자 증언 청취 경위 및 의의	피해자 증언 청취는 한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의례적인 성격이 강함 -증언 청취 전에 담화의 원안을 작성
5	아시아여성 기금 설립 배경 및 실시과정	기금은 한국 정부 동의하에 추진 -피해자 61명에게 기금(1인당 500만 엔) 지급

#### 4-2-3. 검증 결과 재검증

- 산케이신문은 6월 21일 사설을 통해 “강제성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는 채, 한국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여 작성한 과정이 정부 공식의 검증으로 명확해진 의미는 무겁다”고 검증 결과를 평가.
  - 산케이신문의 이러한 평가는 검증 작업이 담화 문안이 어떠한 자료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한일 간에 문안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만을 부각시킨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검증 결과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① 고노 담화에 나오는 역사적 사실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 작성 경위만을 검증한 결과, 동 담화가 마치 외교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음.
    - 현안에 대해 외교 당국자가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외교 본연의 활동이라 할 수 있음. 그리고 문안 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스가 관방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한국과 면밀하게 조정하고 의견을 교환한 것은 사실이 나 이로 인해 사실이 왜곡되지 않았다고 밝혔듯이<sup>8)</sup> 그것이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8) 2014년 10월 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한일 간 교섭과정에서 사실이 왜곡되었다는 불신을 확산.

- 불신이 확산된 이유는 동 담화 문안이 한일 외교 교섭 결과 일부 수정되었다는 점만을 기술하였을 뿐, 한국 측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인지, 수정된 내용이 사실을 왜곡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증은 하지 않은 결과.
- 만약 고노 담화 이후의 연구 성과와 자료를 근거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검증을 했다면 이번 검증 결과는 전혀 달랐을 것임. 위안소 설치에 군이 관여했다는 문구에 대해 검증 보고서는 담화 원안은 군의 '의향'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한국 측이 '지시'라는 표현으로 수정할 것을 주장했고, 조정 결과 '요청'으로 바뀌었다는 점만을 기술. 어느 쪽 의견이 역사적 사실에 가까운지 판단할 근거는 제시되지 않음. 하지만, <표3>에 제시했듯이 고노 담화 발표 이후 발굴된 '야전주보 개정에 관한 규정'(1937.9)이나 위안소 관리인 일기 등을 통해 군이 보다 직접적으로 위안소 설치와 '위안부' 동원에 관여했음이 밝혀졌음

<표 3> 검증 사례(일본군과 위안소 설치의 관계)

주장			역사적 근거	
검증 결과 보고	일본 정부	'군 당국 의향'에 의한 것	검증 결과보고	제시 안 함
	한국 정부	'군 당국 지시'에 의한 것		제시 안 함
	고노 담화	'군 당국 요청에 의해 실시되었다'		제시 안 함
새로운 자료		위안소는 군의 병참시설로 설치	야전주보 개정에 관한 규정(1937.9) “필요한 위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지린성 당안관 공개자료 “위안소는 어느 것이나 병참지부의 알선으로 설치되었고” 『위안소 관리인 일기』 안병직 해제 ‘단순한 관여가 아닌 전시동원차원에서 동원’	

- 검증 보고서는 1993년 8월 4일 담화 발표 시점까지 만을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그 이후의 연구 성과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

- ② 검증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의 '강제성'을 동원과정의 강제로만 협소화 시키고 이를 증명할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부각시킴.
- 검증 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이 강제동원을 증명할 자료는 없었다는 점과 한국 정부가 강제성에 집착했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술.

1993.3

한일 사무협약, 일본정부로서 '강제성'에 관한 일정의 인식을 표할 의사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타진, 한국 측은 사실에 반하는 발표는 불가능하겠지만, (예를 들면, 어떤 형태로든 강제성을 인정하기 전에, “군이 모집에 직접 관여한 것을 보여주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등의) 복잡한 '사전 설명'은 피해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

1993.4

한일 사무협약, 한국 측은 위안부는 일부만 강제성이 있었다고 해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 지금까지 국내

조사결과도 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응답. 동 협의 결과 보고를 받은 이시하라 관방 부장관은 '위안부' 전체에 대해 '강제성'이 있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다는 발언이 있었음. 1993.

(고노 담화 발표 전, 각 성청 및 미국 공립 공문서관 문헌자료 조사, 군관계자와 위안소 경영자 등에 대한 청취 조사, 정대협 증언집 분석 등) "이러한 일련의 조사를 통해서 얻은 인식은 이른바 '강제연행'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1993.

(고노 담화 문안 조정 시) 일련의 조사를 통해서 얻은 이른바 '강제연행'은 확인할 수 없다는 인식 위에서 지금까지 실시한 조사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 측과 문안을 조정

- 하지만 검증 보고서의 검증 결과와는 달리, 고노 담화 작성 당시 군과 관헌이 '위안부' 강제동원에 직접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문서도 발굴되었음. 법무성 보고서인 '이른바 종군위안부에 관한 전쟁범죄 재판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로, 바타비아 임시군법회에서 일본군이 네덜란드 여성을 강제로 동원 매춘을 강요한 것에 대해 처벌받은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음.<sup>9)</sup>
- 이러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노 담화를 한국과의 문제로만 축소시켜 강제동원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내각관방 내각외정심의실이 1993년 8월 4일 발표한 문서에 "이 문제는 작년 1월 미야자와 총리 방한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회담에서도 거론되고, 한국으로부터 실태 해명에 대한 강한 요청이 있었다. 그 외에도 다른 관계 제국, 지역으로부터도 본 문제에 강한 관심이 표명되었다. 이거한 상황 하에서 정부는 1991년 12월부터 관계자료 조사를 진행"<sup>10)</sup>이라고 기술되어 있듯이 고노 담화는 한국 이외의 피해 국가와 지역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였음. 그
- 그리고 고노 담화의 "관헌이 직접 이것에 가담한 사실도 있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는 문구가 내각외정심의실이 발표한 문서에는 "관헌 등이 직접 이것에 가담하는 등의 케이스도 보였다"고 기술되어 있음. 즉 고노 담화는 바타비아법정 자료를 사례로 관헌이 직접 '위안부' 동원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검증 보고서는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증명할 자료는 없었다는 2007년 아베 1차 내각의 각의결정이 정당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아베 정권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주장이 교묘한 형태로 반영됨.

③ 고노 담화의 "관헌 등이 직접 여기에 가담한 사실"이라는 문안에 대해 고노 담화 수정론자들은 이것이 피해자 16명 증언과 요시다 세이지 증언을 근거로 한 것인데, 그 근거가 신뢰하기 어렵다며 담화 수정을 요구해왔음. 그런데 이번 검증 결과 피해자 증언 청취는 의례적이었고 그 이전에 일본 정부가 자료조사를 근거로 담화 원안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 검증 보고서는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스가 관방장관은 국회에서 요시다 세이지한테도 증언을 청취했으나, 신빙성이 낮아 고노 담화에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음.<sup>11)</sup>

- 2014.10.28. 각의결정(쓰시모토 기요미 의원 질문주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고노 담화 원안이 피해자 증언

9) 小林久公「日本政府による資料調査と「河野談話」」、『戦争責任研究 82号』2014, 13쪽.

10) 内閣官房内閣外政審議室「いわゆる従軍慰安婦問題について」(1993.8. 4)

11) 小林久公「日本政府による資料調査と「河野談話」」、『戦争責任研究 82号』2014년, 13쪽.

청취 이전에 작성되었다고 답변함.

- 그런데 일본 정부는 피해자 증언 청취뿐 아니라 정대협에서 만든 증언집도 자료로 수집했음.<sup>12)</sup> 이 증언집의 증언이 고노 담화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혹은 반영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
- 고노 담화 수정론자들은 피해자 16명과 요시다의 증언을 신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한 고노 담화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검증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음.

- ④ 아시아여성기금과 ‘위안부’ 피해자 보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기술은 한국 정부 자료 검토가 병행되어야 기술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안임.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평가는 과제로 미뤄두고자 함.
- 다만 아시아여성기금이 비공개로 전제로 피해자 개별 접촉을 통해 은밀하게 기금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위에 대한 설명 없이 기금을 전달받은 피해자가 61명이라는 사실만을 공개한 것은 커다란 문제임. 아시아여성기금 사업이 한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기금을 받은 피해자 숫자만을 공개함으로써 마치 기금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었다는 오해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음. 동 기금이 비공개로 전제로 전달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명단을 공개한 이유에 대한 검증 역시 필요할 것임.

## 5. 고노 담화 형해화

- 요미우리신문은 2014년 8월 27일 ‘위안부 문제, 사실(史實)을 토대로 새로운 장관담화를’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제2차 대전 중에 일본군이 다수의 위안부를 ‘성노예’로 강제 연행했다는 오해가 국제사회에 확산되고 있다. 그 요인 중 하나가 고노 담화다”고 주장.<sup>13)</sup>
  - 고노 담화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타협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각국 의회 결의안 등 국제사회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의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고노 담화를 수정 혹은 무력화시키는 것이 필요.
- 고노 담화 수정을 주도했던 아베 신조 총리도 공식적으로는 고노 담화의 핵심인 군의 관여를 인정
  - 아베 총리는 2016년 1월 1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없었다는 정부견해(2007년 각의결정)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 2015년 한일합의에서 언급한 ‘당시 군의 관여 하에’라는 것은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립되어,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구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관여하고, 위안부의 모집에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것을 담당하였다”는 것이라고 발언
- 하지만, 일본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이후 국내외에서 성노예와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12) 内閣官房内閣外政審議室 「いわゆる従軍慰安婦問題について」(1993.8.4)

13) 『讀賣新聞』2014년 8월 27일

- 2016년 2월 16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여성차별철폐조약 제7회, 제8회 정부 보고 심사에서 스기야마 외무심의관은 릴리안 호프마이스터(Lilian Hofmeister) 의원과 조우(Zou Xiaoqiao) 주사 질문에 다음과 같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을 밝힘.
  -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하여 ①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②'강제연행'이 유포된 것은 요시다 세이지 증언에 의한 것인데 이 증언을 사실처럼 보도했던 아사히신문도 사실관계의 잘못을 인정했으며, ③피해자 숫자가 '20만 명'이라는 것도 근거가 없고, ④2015년 한일합의에서 '성노예'라는 표현이 한곳에도 안 들어갔듯이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는 것이고, ⑤개인 청구권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이 완료되었음에도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 왔음.
- 정부(외무성,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역사문제 Q&A 문5.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에서 고노 담화 관련 내용 축소
  - (삭제 이전)
 

본문에 "(1)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수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크게 손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관방장관 담화나 총리의 편지를 통해 위안부로서 숭한 고통을 겪으시며 심신에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전해왔습니다."고 기술하고, 참고로 고노 담화를 발췌하여 게재
  - (현재) 본문에는 없고 (参考1) 慰安婦問題についての我が国の取組에 포함된 <慰安婦問題に対する日本政府のこれまでの施策(2014.10.14.)>, (参考2) 慰安婦問題についてのその他の資料에 고노 담화 소개와 전문이 들어감.
-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27일 바바 노부유키(馬場伸幸) 일본유신회 중의원 의원의 종군위안부 등 역사용어에 대한 질문주의서(質問主意書) 답변(각의결정)에서 고노 담화를 계승하는 것이 기본적인 견해라고 하면서도,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는 군에 의해 강제로 연행되었다는 잘못된 인식과 연관된바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취지로 답변
  - 문부과학성은 일본 교과서의 종군위안부 용어 수정 시도

## <자료1> 고노 관방장관 담화 전문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정부는 재작년 12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 그 결과가 정리되었으므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 결과, 장기간에 나아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위안소가 설치되고, 많은 수의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설치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담당했는데, 이 경우에도 감언, 강압 등에 의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더욱이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일도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졌다. 또한,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에서 처참한 것이었다.

또한, 전장에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에 대해서는 일본을 별도로 한다면, 한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당시 한반도를 우리나라가 통치하고 있으며,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한 것으로,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실시되었다.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본 건은 당시의 군 관여 아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낸 문제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다시 새롭게 그 출신지 여하를 불문하고 소위 종군위안부로서 무수한 고통을 경험하고 몸과 마음에 걸쳐서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진 모든 분에게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우리나라로써 어떻게 나타내느냐는 점에 관해서는 有識者의 의견을 등을 참고하면서 앞으로도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해 가겠다. 우리는 역사연구, 역사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같은 잘못을 절대로 반복하지 않는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표명한다.

덧붙여 본 문제에 관해서는 본국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며, 또한 국제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정부로서도 향후 민간의 연구를 포함하여 충분히 관심을 두겠다.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자료2> 검증 보고서의 주요 내용

검증 대상	검증 결과
위안부 문제 관련 교섭 경위	<p>-1991.12 한국 정부가 미야자와 총리 방문을 앞두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요구</p> <p>-1992.1 한국 정부와 아이디어를 교환한다는 방침을 검토했고, 일본 정부 해결방안에 대한 한국 정부 의견 청취</p> <p>-1992.7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일본 측에게 사전에 코멘트를 하도록 요청, “결과적으로 양국에서 사전 조정이 이루어졌다.”</p> <p>-1992.10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기금설치와 진상조사 대상 확대 방침 전달</p> <p>-1992.12 일본 측은 한국 신정권 스텝과 조정을 실시, 조속히 완전한 해결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 결정</p> <p>-1993.4.1 한일외상회담, 와타나베 장관이 ‘인식 표현 방법에 대해 한국 측과 상담하고 싶다고 전달</p>
고노 담화 문안 조정 과정	<p>-1992. 일본 정부 조사결과 발표 직전에 한국으로부터 “조사결과 발표 전에 조사를 한국 정부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할 것,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사무레벨에서 비공식의 사전협의를 할 것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p> <p>-1993.3 한일 사무협약, 일본 측 발표는 한국 측과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일본 측이 자주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발표 내용이 한국 측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발언</p> <p>-1993.5 한일 사무협약, 일본 측이 ‘강제성’ 등의 인식에 대해서는 일언일구까지는 아니지만 한국 측과 조율을 했으면 한다고 하자 한국 측은 여러 가지로 협력하자면서 발표문을 미리 알려 달라고 발언</p> <p>-1993.7.28 한일 외상회담, 일본 외상이 발표 문안에 대해 내밀하게 한국정부와 사전에 상담하고 싶다고 설명</p> <p>-담화 문안의 조정은 담화 발표 전날인 8.3까지 외무성과 주일 한국대사관, 주한 일본대사관과 한국 외교부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짐</p> <p>-1993.7.31 한국이 최초로 코멘트. 한국 측은 발표 내용은 일본 정부가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교섭의 대상으로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발표문 일부를 수정할 것을 요청. 그 후 한국 측은 문안 조정 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코멘트를 함</p> <p>-일본 측은 조사결과를 토대를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 정부의 의향·요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거부한다는 자세로 한국 측과 문안을 조정함</p> <p>-문안 조정 시 주요 논점은 ①위안소 설치에 관한 군의 관여, ②‘위안부’ 모집 시 군의 관여, ③‘위안부’ 모집 시 ‘강제성’이었음</p> <p>-①위안소 설치에 관한 군의 관여: 일본 측의 군의 ‘의향’이란 표현에 대해 한국이 ‘지시’로 바꿀 것을 요청, 이에 일본은 ‘요망’이라는 표현을 제안, 최종적으로는 ‘요청’으로 변경</p> <p>-②‘위안부’ 모집 시 군의 관여: 한국은 군의 ‘지시’를 받은 업자라는 표현을 요구했으나, 일본이 ‘요망’이라는 표현을 제안, 최종적으로는 ‘요청’으로 변경</p> <p>-③‘위안부’ 모집 시 ‘강제성’: 원안 “감언, 강압 등에 의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모집된 사례가 많고”에 대해 한국 측은 “사례가 많고”를 삭제할 것을 요청했으나, 일본 측은 모두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것은 아니었다고 거부, 최종적으로는 ‘당시 한반도가 일본 통치하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전체적으로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는 취지에서 “감언, 강압 등,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로 조정</p> <p>-일련의 조사를 통해서 얻은 이른바 ‘강제연행’은 확인할 수 없다는 인식 위에서 지금까지 실시한 조사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 측과 문안을 조정</p> <p>-한국 측의 요청으로 ‘사죄’가 ‘사죄와 반성의 마음’으로 수정됨</p> <p>-문안은 최종적으로 미야자와 총리와 김영삼 대통령의 승인을 받음</p> <p>-한일 간의 조율과정은 언론에는 일체 발표하지 않기로 합의</p>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 여부	<p>-1992. 일본 측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한국 측은 모집 시의 ‘강제성’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당시 관계자의 증언 등으로 분명해진 강제연행, 강제동원의 핵심적인 사항이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 한국여론의 동향이 우려된다.”고 코멘트</p> <p>-1992.7 징용 방법에 대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혹은 속여서 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는 조사</p>

	<p>에서 발견되었는가라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변함.</p> <p>-1992.10 한국 정부는 강제 유무에 관한 자료 발굴이 중요하고 피해자에 대한 증언 청취를 하여 ‘위안부’가 강제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일본이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응</p> <p>-1992.12 진상규명 조치의 결과로서, “일부에 ‘강제성’의 요소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등 일정한 인식을 표하는 것을 다시 한국 측에 타진</p> <p>-1992.12 한국 측에 ‘위안부’ 모집에는 ‘강제성’이 있는 경우도,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비율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 또, 최종 단계에서 일본 정부 관계자가 ‘위안부’ 대표와 만나 이야기를 듣고 또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를 참고로 하여 강제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어떤 식의 표현으로 하여 (일본)정부의 인식으로 발표하는 것은 어떨지 등을 제안</p> <p>한국 측은 ‘위안부’로 된 것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p> <p>-1993.2 ‘강제성’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일부에는 군 또는 정부 관헌의 관여도 있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형태’에 의해 중군위안부가 된 사례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선에 따라 일본 정부로서의 인식을 표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한국 정부에 타진한다.”는 방침이 제시됨.</p> <p>-1993.3 한일 사무협약, 일본 정부로서 ‘강제성’에 관한 일정의 인식을 표할 의사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타진</p> <p>한국 측은 사실에 반하는 발표는 불가능하겠지만, (예를 들면, 어떤 형태로든 강제성을 인정하기 전에, “군이 모집에 직접 관여한 것을 보여주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등의) 복잡한 ‘사전 설명’은 피해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p> <p>-1993.4 상순, 한일 사무협약, 한국 측은 ‘위안부’는 일부만 강제성이 있었다고 해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p> <p>-1993.4 하순, 한일 사무협약, 지금까지 국내 조사결과도 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응답</p> <p>동 협약의 결과 보고를 받은 이시하라 관방 부장관은 ‘위안부’ 전체에 대해 ‘강제성’이 있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다는 발언이 있었음</p> <p>-1993. (고노 담화 발표 전, 각 성청 및 미국 공립 공문서관 문헌자료 조사, 군관계자와 위안소 경영자 등에 대한 청취조사, 정대협 증언집 분석 등) “일련의 조사를 통해서 얻은 인식은 이른바 ‘강제연행’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p> <p>-1993. (고노 담화 문안 조정 시) 일련의 조사를 통해서 얻은 이른바 ‘강제연행’은 확인할 수 없다는 인식 위에서 지금까지 실시한 조사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 측과 문안을 조정</p>
<p>피해자 증언 청취 경위 및 의의</p>	<p>-1992.10 일본 정부 검토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구술조사는 곤란하다고 판단</p> <p>-1992.10 한국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증언 청취를 하여 ‘위안부’가 강제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일본이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제시</p> <p>-1992.12 진상규명 결과 및 후속조치에 관해 한국 측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최종단계에서 ‘필요 최소한의 형태’로 실시</p> <p>-1992.7~10 한국 측으로부터 누차에 걸쳐 피해자 증언 청취 요청이 있었음</p> <p>-1993.7 조사 내용은 비공개라는 취지를 전하고 조사를 시작함</p> <p>“담담하게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었고 기억이 꽤 혼란스런 사람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었지만 일본 측은 전 ‘위안부’가 말하는 것을 성실하게 듣는 자세로 시종(일관)했다”</p> <p>-증언 청취 조사의 평가는 진실규명보다도 그 때까지의 경위도 토대로 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일본 정부가 청취를 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p> <p>-동 결과에 대해 사후에 뒷받침 조사와 다른 증언과의 비교는 하지 않았음</p> <p>-증언 청취조사와 고노 담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청취조사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추가조사 결과도 거의 정리되었기 때문에, 청취조사 종료 전에 이미 담화 원안이 작성되었음</p> <p>-담화 문안은 청취조사(7.26~30)가 끝나기 전인 7.29 이미 기안했음</p>
<p>아시아여성</p>	<p>-1992. 한국 측은 보상과 65년 청구권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국내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있음</p>

<p>기금 설립 배경과 실시 과정</p>	<p>-1992.12 조치는 한국의 의견도 참고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본이 자발적으로 실시  -1993.6 한일 외상회담, 한국 측으로부터 일본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은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설명이 있었음  -(김영삼 정부)한국 측은 한일 간에는 법적 보상 문제는 해결이 완료되었으며, 어떤 조치를 취할 경우 법적 보상은 아니고, 그 조치는 공식적으로는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해야 할 것이지 한국 측이 관여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 표명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청구권 문제는 법적으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고, 한국 ‘위안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배상 조치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는 취지를 한국 측에 확인  -한국 측은 일본 측이 전후처리 청산 차원에서 자주적으로 처리할 문제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일본 측의 조치에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반응  -1995.6 기금 설립 취지에 대해 한국 측은 일본 정부로서의 공적 성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과 일본 정부로서의 사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점에 있어 평가하고 싶다는 의견 표명. 관계단체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로서 가능한 한 협력하고 싶다는 반응이 있었음  -1995.7 한국 정부는 기금 설립에 관한 관방장관 발표를 한국 외교부로서 평가한다는 성명을 냈지만, 그 후 피해자 지원단체가 발발하자 공개적인 협력은 어렵고 수면 하에서 일본정부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포함  -기금에서 61명의 피해자에게 1인당 500만 엔 지급</p>
--------------------------------	---

<자료3>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의 <역사문제 Q & A>

문5.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1) 위안부 문제는 1990년대 이후 일한 간에 첨예한 외교적 문제가 되어 왔지만 일본은 이에 진지하게 노력해 왔습니다. 일한 간의 재산 및 청구권 문제는 1965년 일한 청구권·경제협력협정을 통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 전제하에 위안부였던 분들의 현실적인 구제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1995년 일본 국민과 일본 정부가 협력하여 재단법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약칭:‘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하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위안부였던 분들께 일본 정부의 거출금을 자금으로 의료·복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일본 국민의 성금을 자금으로 ‘사과금’(atonement money) 지급하면서 역대 총리대신이 자필로 서명한 ‘사죄의 서한’을 보내는 등 최대한 노력해 왔습니다.

(2) 더욱이 일한 양국 정부는 다대한 외교적 노력 끝에 2015년 12월 일한 외교장관회담에서 합의하여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일한 양국 정상 간에서도 이 합의를 양국 정상이 책임을 갖고 실시할 것, 그리고 향후 여러 문제에서 이 합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대응할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합의에 대해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당시)을 비롯하여 미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에서도 환영하였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2016년 8월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에 대하여 10억 엔을 거출하였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은 그동안 합의 시점에 생존해 계신 분들 47명 중 35명에 대하여, 또한 돌아가신 분들 199명 중 64명의 유가족에 대하여 자금을 지급했으며 많은 위안부였던 분들로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

(3) 그러나 2016년 12월 한국 시민단체는 주부산총영사관에 인접한 인도에 위안부상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외교부 장관 직속인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1월 9일 강경화 외교부장은 ①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 ②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2018년 7월 한국 여성가족부는 일본 정부의 거출금 10억 엔을 ‘전액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편성하여 ‘양성평등기금’에 출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1월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4) 더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안부 소송에서 2021년 1월 8일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고 일본 정부에 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지급 등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같은 달 23일 동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하에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이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해 온 바 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일한 간의 재산 및 청구권 문제는 1965년 일한 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고 또한 2015년 12월 일한 외교장관회담 합의에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국제법 및 일한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지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국가로서 갖는 책임에 따라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력히 요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5)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인 일한 합의는 비록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책임을 갖고 실시되어야 합니다. 일한 합의의 착실한 이행은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일한 합의하에서 약속한 조치를 모두 이행해 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도 이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한국 측의 합의 이행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대해 일한 합의를 착실히 이행할 것을 계속 강력히 요구해 나갈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참고 1) 일한 합의

(참고 2) 각국에서 실시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노력

(참고 3) 위안부였던 분들에 대한 고이즈미 내각총리대신의 서한

(참고 4) 재단법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아시아여성기금)

(참고 5) 일본 정부의 조사와 내각관방장관 담화

**(참고 6) '강제연행'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

(참고 6) '강제연행'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그동안 일본 정부는 진지한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연행'이나 '성노예'와 같은 표현 외에도 위안부의 수를 '20만 명' 또는 '수십만 명'이라고 표현하는 등 사실에 근거한다고 하기 어려운 주장들도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제연행'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가리키는 기술(記述)은 찾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예를 들어 1997년 12월 16일 각의(閣議) 결정 답변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 '성노예'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점은 2015년 12월 일한 합의 때 한국 측과도 확인하였으며 일한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 위안부의 수에 관한 '20만 명'이라는 표현

'20만 명'이라는 숫자는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위안부 전체 숫자에 대해서는 1993년 8월 4일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발견된 자료에는 위안부의 총수(總數)를 가리키는 내용은 없고 이를 추정하기에 충분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안부 총수를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참고) 여성차별철폐조약 제 7 회 및 제 8 회 정부 보고 심사 (질의응답 부분의 스기야마 외무심의관 발언 개요) (2016년 2월 16일, 제네바) PDF파일

## [토론문] 남상구, 아베 정부의 고노 담화에 대한 검증을 재검증

오승희(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 1. 고노 담화를 둘러싼 5단계 흐름

- 고노담화 관련 자료 및 논의의 총괄
- 고노담화 발표 경위 → 고노담화 내용과 평가 → 고노 담화에 대한 공격 → 아베 정권의 고노 담화 재검증 → 고노 담화 형해화
- 고노담화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인정 문서
- p.9 일본유신회 나카야마 나리아키 의원, “한국은 여러 외국에서 위안부 문제를 일러바치는 외교를 전개”, “국제적으로 강제연행을 인정한 것 같은 1993년 8월 ‘고노 관방장관 담화’에 근본적인 원인”
- p.11 고노담화 검증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실을 밝히기 위한 검증이 아닌 ‘고노담화’가 나오게 된 ‘작성경위’
- 사실과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 타협의 산물로 인식

### 2. 검증의 재검증: 고노 담화 수정론의 비판적 검토

- 무엇을 검증하였나? 의도는 무엇이었나?
- 검증대상: 위안부 문제 관련 한국정부와 교섭경위, 고노 담화 문안 조정 과정,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여부, 피해자 증언 청취 경위 및 의의, 아시아여성기금 설립 배경 및 실지과정
- 검증팀 구성의 문제, 역사적 사실 검증이 아닌 작성 경위만의 검증이었음
- 강제성을 강제 연행으로 협소화, 강제동원, ‘강제성=위안부문제’로 집약
- “증명할 자료는 없었다”는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공개 및 선택적 공개문제
- 요시다 세이지와 위안부 증언의 신뢰성 부정, 증언의 신빙성 문제시
- 강제연행의 부정, 요시다 세이지 증언의 부정, 피해자수 20만명 부정, 성노예 표현 부정, 개인청구권 문제 해결 주장
- 재검증은 ‘고노 담화’와 일본군 '위안부'를 부정하기 위한 검증이었음
-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증거의 부재와 강제성 개념에 대한 논의를 내세우면서 사실상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부정

### 3.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인정할 수 없지만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Q. 위안부 문제를 충분히 인정하지는 않지만,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모순적인 주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고노담화는 일본군'위안부'의 무엇을 인정하고 있는가?

p.3) 1993.6.29. 한승주 외교부장관과 무토 가분 외상과의 회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원칙 제시:

1) 위안부 진상 철저 조사, 2) 강제성 명확히 인식, 3) 교훈으로 삼을 것

이를 진상규명, 강제성, 역사교훈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존재, 권리, 가치 차원에서 인정과 연계해서 살펴볼 수 있음.

- 사실/존재의 인정: 2문단(사실 확인, 범죄의 존재, 식민지배)

“장기간에 나아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위안소 설치되고 많은 수의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에서 처참한 것이었다”

“한반도가 큰 비중”, “한반도를 우리나라가 통치하고 있으며,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 법/권리의 인정: 2-3문단(강제성, 책임소재)

구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했다. /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 /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 “감언, 강압 등에 의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 정신·가치 차원:4-5문단(역사의 교훈, 계승)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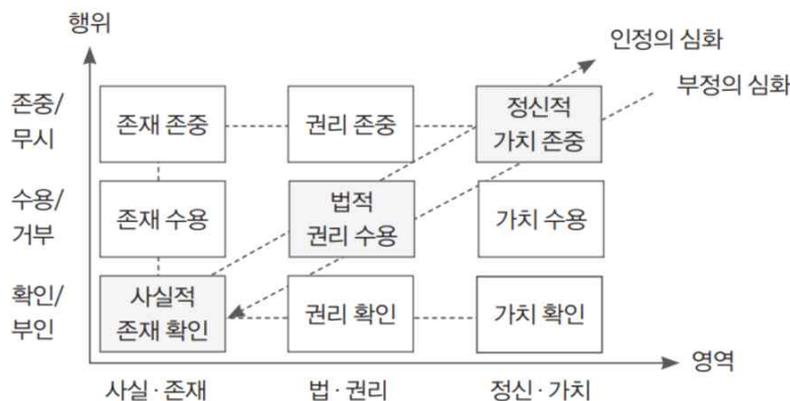
“유식자의 의견 등을 참고하면서 신중히 검토”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

“역사연구, 역사교육을 통해 오랫동안 기억”

“같은 잘못을 절대로 반복하지 않는다는 굳은 결의”

“국제적으로 관심, 민간의 연구를 포함하여 충분히 관심” ↔ 최종적 불가역적



[그림 1] 인정-부정의 개념화

-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부정하는가에 대한 면밀한 인식
- 무엇을 “계승”하는가?

#### 4. 일본군‘위안부’ 부정하기 전략

- p.12 핵심전략: “강제성을 동원과정의 강제로만 협소화시키고 증명 자료가 없다는 것으로 강제성 존재의 삭제 시도”

부정 논리를 만드는 방식

- 개념 축소 및 재정의: ‘강제성’ 논란
- 부재의 증명: 입증책임의 문제, 근거없음, 자료의 비대칭과 불균형
- 부분 부정을 통한 전부 부정: 일부 강제연행 아님(강제 연행 있었음을 추가 증명하는 것보다 강제연행 없었던 사례가 더 강력하게 와닿는 이유?)

3중 차원의 부정

- 증거자료 제시한다고 인정할 것인가? 설명x, 사실·존재 확인의 인정의 어려움(고노담화 재검증의 이유)
- 강제성 존재 문제와 ‘위안부’ 존재 자체의 문제는 다른 대상에 대한 인정 문제 (법적 책임의 완화, 법·권리 인정 분야의 협소함)
- 어떻게 인정하게 할 것인가? (정신·가치 차원의 인정의 교집합 찾기)

#### 5. 일본군‘위안부’문제의 다층적 접근

- 한국측

사실·존재의 인정: 위안부 존재 자체의 기록

법·권리의 인정: 강제성 개념 규정 문제

정신·가치의 인정: 명예와 존엄, 역사 교육 및 연구, 계승의 문제

- 일본측

사실·존재의 부정: 위안부 존재 자체의 기록의 부재

법·권리의 부정: 강제성 개념의 축소, 비강제적 증거의 추가

정신·가치의 부정: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 일본 정신·가치의 인정: 일본의 명예와 존엄

- 탈전후, 포스트 코로나시대,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강제성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다층적 접근과 정신, 가치 차원의 인정 확대 필요?

상호 명예훼손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

# 일본군 '위안부' 서사 연구

이지은

질문들

1. 서론

Q. 한국 소설에는 왜 '위안부'가 나타나지 않을까?

징용에 끌려간 사람들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어쩌다가 돌아오는 사람은 거지가 되어 오거나 병신이 되어왔다. 더구나 <여자 정신대>에 나간 처녀들은 한 사람도 돌아오질 않았다.

-김정한, 『수라도』(1969)

월레네 가족들의 우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남들도 한결같이 안 돌아왔다면 또 모르지만, 징병으로, 징용으로, 데이신파이(挺身隊)로 끌려 나갔던 사람들 가운데 돌아온 사람도 꽤 많은데, 어찌 하필 월레는 돌아오지 않는 족에 끼었는지…… 함께 데이신파리로 나갔던 덕심이는 무사히 돌아왔고, 또 명자는 자기 아버지를 찾는다고 동경에 남았다는 확실한 소식이라도 있는데, 월레만 돌아오지도 않고, 소식도 없으니, 도무지 답답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중략)

「뭐라? 고모가 살아 있어? 신문에 났다고? 정말이까?」

「정말이라예. 보이소. 여기 안 나와 있는가」

「어디 어디, 그게 고모 이름이까?」

「예, 안월레, 여, 사십 구 세, 무국적, 이렇게 안 돼있읍니꼬」

-하근찬, 『월레소전』 (1973~1975)

Q. 우리는 '남은 자(혹은 피한 자)'의 자리에서 '위안부'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해방 후에 서울로 다시 왔지. 내려와 가지고 보니까 학도병 갔던 사람, 강제 징용 갔던 사람, 보국대 갔던 사람, 다 오는데 여자가 돌아왔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 거기서부터 내가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때가 스무 살이었어. 그래서 학도병 나갔던 사람에게 물어봤어. 그런데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어. 이 여자아이들이 먹을 시간도 없이 밤새도록 그랬다는 거야.

-윤정옥 인터뷰(『25년간의 수요일』, p.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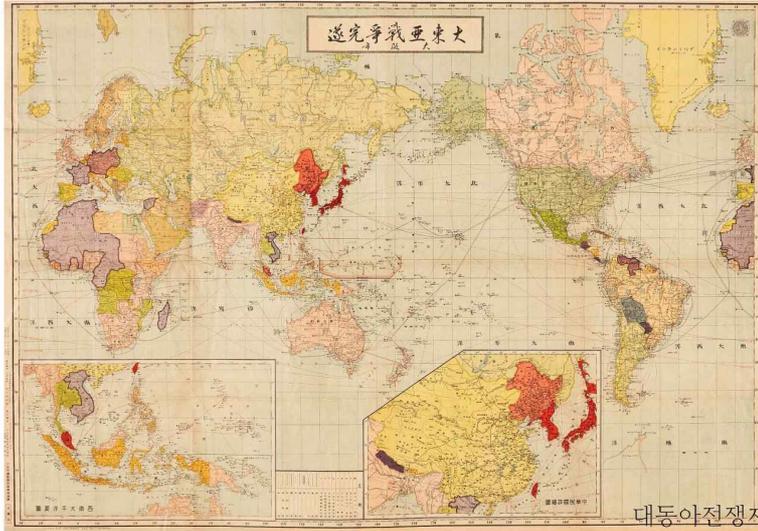
그대로 끌려간 분임이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죽은 것일까, 아니면 아직도 어느 하늘 아래 살아있는 것일까? 갑례는 해방되고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다. 듣자하니, 그 무렵 그렇게 끌려간 처녀 들은 남양군도로 가서, 일본 군인들의 위안부(慰安婦) 노릇을 했다는 것이다. 그때도 헤이따이상의 시다지끼가 되려 간다는 말이 있었으나,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더니, 시다지끼란 바로 밑에 깔려 그짓 하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다. 도대체 그 이야기가 정말일까?

-하근찬, 『야호』(1970~1971)

Q. '위안부' 서사의 고정된 위치(=남은 자의 자리)를 지각하지 못했던 까닭은 무엇일까?



대동아전쟁세계요도(천안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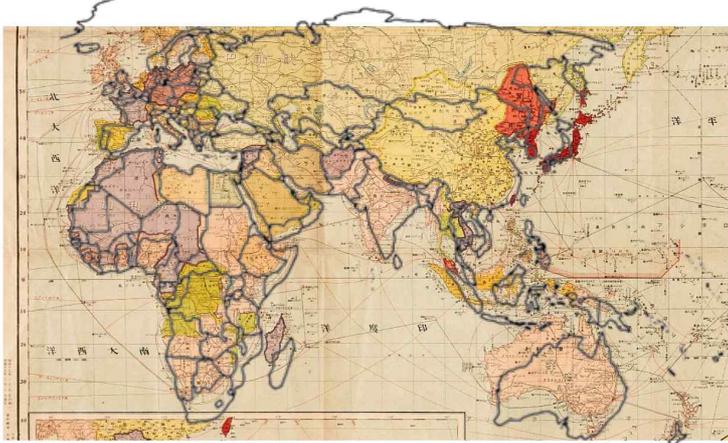


대동아전쟁지도(대한민국역사박물관, 1942)



국경에 따른 세계 지도

Q. 사건은 '전선(front line)'에서 발생했는데, 우리는 종전 후 형성된 '국경(border)'을 인식을 삼아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러한 시각으로 되돌아보면, '위안부' 문제가 처음 불거진 장소도 전선이 국경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파열 지점이었다는 것이 재발견된다. ... 신분이 밝혀져 있는 이들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난 피해자는 배봉기인데, 그녀가 위안소 경험을 털어놓게 된 결정적인 계기에는 1972년 오키나와의 시정권(施政權) 반환 문제가 놓여 있다. 많은 조선인 군속과 군인, 그리고 '위안부'들이 이송되었던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 가운데 유일하게 지상전이 벌어졌던 '전선'으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곳이다. ... 한국 사회에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한 기념비적 기사라 알려져 있는 윤정옥의 『'정신대' 원혼 서린 발자취 취재기』1~4(『한겨레』, 1990.1.4~24.)에서도 '위안부'를 추적하는 행로에는 태평양전쟁의 남방 전선이 뚜렷하게 감지된다. 태평양 전쟁 당시 '위안부'는 '군수품'으로서 취급되고 이송되었는데, 이는 여성의 유린된 인권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장소가 전선이었음을 재확인시켜준다. 1991년부터 '위안부' 문제를 인식하는 시각에서는 국경만이 부각되어 왔을 뿐, 전선이라는 특수한 경계가 간과된 경향이 있다.(pp. 4~5)

체계화된 전시 성폭력 시스템인 위안소는 1932년 상해사변과 1937년 중일전쟁 발발, 그리고 1941년 태평양전쟁 개전과 함께 전선을 따라 확대되어 갔다. 전선의 확대는 일본 제국의 경계가 본국과 식민지를 넘어 전쟁권역으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실 일본 제국의 통치역은 법역(法域, jurisdiction), 어문역(語文域), 화폐역(貨幣域) 등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복수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파시즘 체제로의 전환과 태평양전쟁의 발발과 함께 재편되었다. 전쟁은 전체주의라는 형태로 공권력과 국가 체제를 일원화·공고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다른 층위의 다양한 영역들을 뒤섞이게 만든다. 전쟁은 전선이라는 새로운 경계를 형성하며 군대의 점령을 통해 기존의 공권력과 다른 영역을 만들어 낸다. 군법이 법역을, 군표가 화폐역을, 군의 명령 하달과 문서가 새로운 어문역을 구축한다. 전쟁은 단순히 선형적 경계선을 만들거나 변형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령자와 피점령자 사이에 새로운 법과 언어, 그리고 화폐 체계를 구축하면서 기존의 통치역을 탈영토화·재영토화한다. (p. 6)

‘전쟁 기계(machine de guerre)’의 이와 같은 성격은 영토화된 공간을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연구 시각으로는 ‘위안부’ 서사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애초 사건의 장소인 전선은 물자와 사람의 이동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민족과 언어를 뒤섞으며, 나아가 그 자체로 끊임없이 이동하며 기존의 영토를 재편하는 강력한 힘이였다. 위안소라는 전시 성폭력 사건은 전선에서 발생하였는데, 그 사건에 대한 의미화의 사태는 국민국가의 국경이 재편되고 공고화되는 과정 속에서, 전제민들이 각국으로 귀환하고 각국의 민족주의가 재구성되는 담론장 속에서 생산된 것이다. 따라서 목격담, 전쟁회고는 물론이고 피해당사자의 증언까지 포함하여, ‘위안부’ 서사에는 경계의 재편과 월경(越境)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1945년 종전 이후 새롭게 편성된 국경에 의해 다양한 경계들의 혼재와 운동은 냉각·축소되었고, 근대국가 경계의 공고화와 함께 이를 전제로 한 ‘한국문학사’가 정립되었다. 국경은 ‘위안부’ 서사를 굴절·왜곡하면서 국민국가 내부로 포획하거나 국경 바깥에 남아 떠도는 이야기를 소거하는 ‘검문’ 장치로 작동했다. 이에 종전 후 국민국가 체제에서 생산·유통된 ‘위안부’ 서사는 그 기원적 특성에 따라 전선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국경이라는 인식적 경계 아래에서 독해된 것이다.(pp. 7~8)

전쟁이 '지도 그리기'라면, '위안부' 서사 또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때 '지도 그리기(catarographie)'란 단순히 자연물을 모사하는 '전사술(décalcomanie)'이 아니라, 세계를 인식하는 새로운 틀을 구현하는 것이다. 즉, '위안부' 서사의 유동성을 추적한 지도는 고착화되고 선형적인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번역과 편집, 국경 사이의 이동과 국경 내부에서의 물화 등 텍스트의 흐름과 방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위안부' 담론장을 구축하고 있는 인식틀을 탈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고는 전선(front line)에서 발생한 '위안부' 서사가 국민국가의 경계(border)를 유동하면서 재구성된 양상을 실증적으로 추적하고, 해방 직후 형성된 목격 담론에서부터 오늘날 피해자 증언에 대한 듣기 태도에 이르기까지 '위안부' 담론의 의미론적 지층을 분석하고자 한다. (pp. 9~10)

2.1. '위안부' 잡사(雜事)와 '유사 사건'의 구성

2.2. '제한적 교신자'와 금기된 나레이터

2.3. 학병의 '서사 정체성'과 구성된 타자로서 '위안부'

2. 국민국가의 형성과  
'목격-침묵'의 이중 담론

3.1. 어문역(語文域)의 검문과 '위안부' 서사의 상호텍스트성

3.2. '위안부' 서사를 둘러싼 제국-식민지 남성의 분열과 공모

3.3. 조선인 '위안부' 수기의 재번역과 '통약불가능성'

3. 국경을 통과하는 '위안부' 서사와 되받아쓰기의 양가성

4.1. 미귀환 '위안부'와 텍스트의 포획

4.2. '침묵'의 양의성과 '공개 증언자' 서사의 이면

4.3. '위안부' 서사의 유동성과 피해자 증언의 물화

4. '위안부' 서사의 탈국경화와 기대지평의 변화

논문의 전체 체계	1. 서론
2. 국민국가의 형성과 '목적-침묵'의 이중 담론	<div style="background-color: #800000; color: white;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목적자(testis)의 증언</div> <div style="background-color: #008000; color: white;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생존자(superstes)의 증언</div>
2.1. '위안부' 잡사(雜事)와 '유사 사건'의 구성	
2.2. '제한적 교신자'와 금기된 나레이터	
2.3. 학병의 '서사 정체성'과 구성된 타자로서 '위안부'	
3. 국경을 통과하는 '위안부' 서사와 되받아쓰기의 양가성	
3.1. 어문역(語文域)의 검문과 '위안부' 서사의 상호텍스트성	
3.2. '위안부' 서사를 둘러싼 제국-식민지 남성의 분열과 공모	
3.3. 조선인 '위안부' 수기의 재번역과 '통약불가능성'	
4. '위안부' 서사의 탈국경화와 기대지평의 변화	
4.1. 미귀환 '위안부'와 텍스트의 포획	
4.2. '침묵'의 양의성과 '공개 증언자' 서사의 이면	
4.3. '위안부' 서사의 유통성과 피해자 증언의 물화	

연구 시각 및 연구 목적	1. 서론
<p>아감벤은 증언을 '목적자(testis)의 증언'과 '살아남은 자(superstes)의 증언'으로 나누어 논의한 바 있다. 흥미롭게도 라틴어에서 'testis'는 증인 외에도 '고환'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법정 용어로서의 증언(testimony)이 testis에서 유래한 것도 여기에 기인하는데, 남성만이 시민이 될 수 있었던 로마에서는 증언을 위해 선서를 할 때 고환에 손을 얹었다고 한다. 성경에서도 남성들이 사타구니에 손을 얹고 맹세하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는 곧 법적 장치로서의 '증언(testimony)'이라는 말 자체가 남성성을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법 장치는 객관적 심판 기관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어원을 통해 보건대 법률적 증언이라는 제도 그 자체에 이미 남성성이 기입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그것은 공론장에 피해자의 증언이 등장하기 전까지 '위안부' 담론의 주된 출처가 'testis(남성 목적자)'의 증언이라는 것이다. 목적담은 복제·변형되면서 '추문'으로서 유통되었고, 이렇게 구성된 담론의 영향 아래에서 문화적 재현물이 생산되었다. 바로 이와 같은 재현이 실제적 사실로 해석될 때 역사가 '수정'된다. 당연한 말이지만, '위안부' 서사 연구는 역사적 실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실제 위에서 공동체가 '위안부'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탐구하는 것이다.(pp. 20~21)</p>	

2. 국민국가의 형성과 '목격-침묵'의 이중담론

2.1. '위안부' 잡사(雜事)와 '유사 사건'의 구성

→ 귀환 전재동포, 조선인 업자 ...

2.2. '제한적 교신자'와 금기된 나레이터

→ 해외특파원/소설가

2.3. 학병의 '서사 정체성'과 구성된 타자로서 '위안부'

→ 조선인 학병

해방 후에 서울로 다시 왔지. 내려와 가지고 보니까 학도병 갔던 사람, 강제 징용 갔던 사람, 보국대 갔던 사람, 다 오는데 여자가 돌아왔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 거기서부터 내가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때가 스무 살이었어. 그래서 학도병 나갔던 사람에게 물어봤어. 그런데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어. 이 여자아이들이 먹을 시간도 없이 밤새도록 그랬다는 거야.

-윤정옥 인터뷰(『25년간의 수요일』, p. 122.)

“여자들은 돌아오지 않고 소문만이 돌아왔다.”

정말 그럴까? 소문이 돌아서 여자들이 돌아오지 못한 건 아닐까?

목격담이 침묵의 담론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닐까?

2. 국민국가의 형성과 '목격-침묵'의 이중담론

2.1. '위안부' 잡사(雜事)와 '유사 사건'의 구성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나 공돈의 경우 오랫동안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불쌍한' 동포 여성을 구한 의인으로 추켜세워지기까지 했다. 당대 독자들이 이들을 의심하지 못했던 까닭은 공돈과 권후원이 '위안부' 여성을 '보는 방식', 곧 병리화하고 타자화하는 방식이 공동체의 여성 인식과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에 비추어 '그럴 법'했기 때문일 것이다. ... 모든 재현(re-presentation)은 사건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사회의 특정 이데올로기나 인식 주체의 위치에 의해 사건이 '조작'되어 다시-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격담 속에서 사건은 역사적 실체가 아니라 당대 사회의 규범이 투영된 '유사 사건(pseudo-event)'으로 재구성되고, 그 가운데 피해자 여성은 공동체가 내면화하고 있는 여성 억압적 이데올로기에 부합되도록 재현된다. (p. 36)



2.1. '위안부' 잡사(雜事)와 '유사 사건'의 구성

2. 국민국가의 형성과 '목격-침묵'의 이중담론

民族反逆者等處斷法案(修正草案)  
五十七次立議에 上程

第四條 附日協力者는 十年以下의 懲役에 處하거나 五、言論、文書、技藝等 停止前項의 罪者犯한 者로 戰爭行爲을 鼓吹한 者의 沒收을 依하여 財產六、日本軍에 從軍하여 第二條第二項의 規定은 同施는 聯合國民을 迫害前項의 財產沒收에 適七、日本軍을 慰安한 日 用第三條 戰爭犯罪者의 妻子를 提供한 者第五條 滯留事變以後 第六條、第二條의 處罰規 左記各項에 該當한 者 第四條奸商等 是爲하여 惡質的으로 後贖買的으로 謀利行爲 聯合國은 同胞에게 害를 加한 者 戰爭犯 是爲하여 國民生活 一、聯合軍俘虜를 虐待 二、戰力增強을 目的으로 軍需事業을 經營한 者 三、日本軍部에 十萬 圓以上の 現金은 軍需品 人의 所有或는 管理하는 是爲하여 該當한 者 財產을 不當히 收受한 者

그렇다면 이처럼 조선인 위안부 소 업자가 재빠른 변신을 하는 동안 공적 담론에서는 업자들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것일까.

「民族反逆者等處斷法案(修正草案)」, 『조선일보』, 1947.4.25.

2.1. '위안부' 잡사(雜事)와 '유사 사건'의 구성

2. 국민국가의 형성과 '목격-침묵'의 이중담론

美兵凌辱事件이라  
는 것이 그一部는  
賣春行爲인 모양은  
모서 우물쭈물된  
모양이요 이연間  
題는 事實內容과  
犯科의 輕重如何를  
莫論하고 彼此에  
을 지않고 누구나 變遷을  
禁치 못하는 바거니와 이  
에對한 臨時措施로라도  
나은 對策이 없을지 軍  
政 및 軍側에서 特別 考慮  
가 있을 줄이나 此際 應  
急 妥善切實한 方針이 實  
施되어야 할까 한다 昨  
日 各紙에도 此種 摘發檢  
束이 報道되었지만 近  
者 市內 某々 地區에 是  
陰을 띠서 不良婦女輩의  
跋扈와 亂行이 滋甚하여  
가 傾向으로 附近의  
住民의 苦痛과 怨聲이  
繼々하고 間或은 그다  
其 巢窟로 窺認된 隣接  
民家의 邊辱도 없지 않아  
風紀上으로는 勿論、軍  
人과의 空然한 摩擦誤解  
가 醸成될까 염려하다 是  
첫째는 不正當의 取締  
과 處罰을 嚴重히 할 것  
이요 二 不良婦女輩가 邪  
片中 毒者인 경우가 許多  
하다 是點을 보아 이 方面  
의 查察 闡束도 周密하여  
야 할 줄이나 一 慰安  
軍人에 對하여서는 慰安  
施設을 適宜히 提供하여  
▲ 이 方向으로 誘導하고  
染中케 하여 市街의 泥  
濘을 防止하는 何等 方法  
이 善處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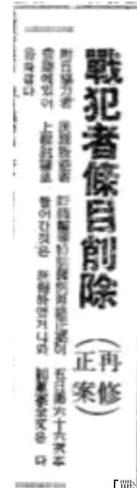
"주둔 군인에 대하여서는 위안시설을 적의히 제공하여 이 방향으로 유도하고 집중케하여 시가로의 범람을 방지하는 하등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다"

「餘滴」, 『경향신문』, 1947.5.1.

2.1. '위안부' 잡사(雜事)와 '유사 사건'의 구성

2. 국민국가의 형성과 '목적-침묵'의 이중담론

(다) 「수정안」 '제3장 전쟁범죄자' 항목	(라) 「재수정안」(초안) 관련 항목
一, 聯合軍浮屠를虐待한者	-
二, 戰力增強을 目的으로軍需産業을經營한者	第2章 附日協力者 第3條 가. 4) 日本의 軍需工業을 大規模로 經營한 責任者
五, 言論, 文書, 技藝等으로서戰爭行爲를鼓吹한者	第2章 附日協力者 第3條 나. 3) 日本國策을 推進식할 目的으로 設立된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團體 及 言論機關의 指導의 幹部
六, 日本軍에從軍하야同胞또는聯合國民을迫害한者	-
七, 日本軍을慰安할目的으로婦女子를提供한者	第2章 附日協力者 第3條 나. 4) 其他 惡質行爲로 附日協力한 者



「戰犯者條目削除 (再修正案)」, 「동아일보」, 1947.5.7.

2.2. '제한적 교신자'와 금기된 나레이터

2. 국민국가의 형성과 '목적-침묵'의 이중담론

편지를 받는 쪽  
(국가 내부)

편지를 보내는 쪽  
(교신자/특파원, correspondent)

**강로향(姜鷲鄉)**

- 본명 강성구(姜聖九), 1915년 경남 하동 출생
- 선의주상업학교를 거쳐 상해 대동대학 중문학과에 입학.
- 상해에 있는 동안 「개벽」지 상해 특파원으로 활동.
- 1940년경부터는 '상해중화영화회사(上海中華電影公司)'에 근무
- 해방 후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중앙위원
- 외교관으로서 주일대표부 근무

2.2. '제한적 교신자'와 금기된 나레이터

2. 국민국가의 형성과 '목격-침묵'의 이중담론



姜鶯鄉, 『上海通信 八·一三前後』, 『조광』, 1938.10, p. 62.

2.2. '제한적 교신자'와 금기된 나레이터

2. 국민국가의 형성과 '목격-침묵'의 이중담론



<종각-또 하나의 새벽을 그리며>(양주남 감독, 1958)



『宗匠-또하나 다른 明日을 위하여』, 『백민』, 1948.10.

## 2.2. '제한적 교신자'와 금기된 나레이터

## 2. 국민국가의 형성과 '목격-침묵'의 이중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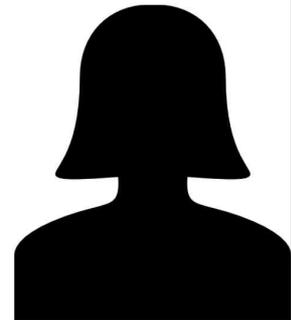
강로향의 『火印』은 그동안 '괄호쳐져' 있던 재외 조선인 '위안부'의 모습을 포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별점을 지닌다. 이는 그가 오랫동안 해외 특파원(correspondent)의 위치에 있었던 것에 연유한다. 강로향의 소설에서 확인되는 비극이란, 영토 내부의 시선에서 끌려가는 여자들에 대한 공동체의 동포애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영토 바깥에서 '위안부'가 된 여자들을 마주할 때 그 동포애는 동정 이상의 동질감으로 발휘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문학이 해외로 이송된 '위안부' 여성들의 소식을 전하던 방식에 빗대어 말하자면, 강로향은 돌아오지 못한 '위안부'의 편지를 받는 쪽이 아니라, 그 편지를 보내는 교신자(correspondent)의 위치에 있었던 작가였다. 강로향이 솔직하게 드러낸 동족 지식인 남성 오창세의 양가적인 시선은 끌려가던 친족이나 이웃의 모습만을 기억하던 한반도 내부의 시선과는 다르다. 여자들을 보내던 쪽에 있던 사람들은 그녀들을 공동체의 동질한 일원으로 상상하지만, 그리하여 그들의 동포애는 분열되지 않지만, 전장에서, 성폭력의 현장에서 그녀들을 마주한 이들의 시선은 동정과 혐오로 분열된다. 이는 민족국가 내부에서 '일제에 유린당한 우리 처녀'를 상상하는 방식으로는 포착할 수 없었던, 혹은 그러한 상징 속에서 은폐되었던 '위안부'에 대한 타자화이다. (pp. 64-65)

## 2.3. 학병의 '서사 정체성'과 구성된 타자로서 '위안부'

## 2. 국민국가의 형성과 '목격-침묵'의 이중담론

### 학병

- 1920년대 출생
- 학도지원병제도(1943.10)
- 당대 최고 엘리트
- 식민지인이자 제국의 군인으로서 폭력의 수행자
- 해방 후 '건국의 주역들'
- 전쟁 성범죄에 연루된 자(혹은 가해자)이자 목격자



### '위안부'

- 1920년대 전후 출생
- 식민지·하층·여성
- 해방 후에도 위안소 피해 여파 속에서 살게 됨

### 2.3. 학병의 '서사 정체성'과 구성된 타자로서 '위안부'

### 2. 국민국가의 형성과 '목격-침묵'의 이중담론

당대 엘리트 계층이었던 학병은 전장의 '위안부'를 목격하고 이를 기록할 수 있는 중요한 주체였다. 이들은 전장의 위안소에서 동족 여성을 목격하고 식민지인으로서의 동류의식을 느꼈다. 이때 조선인 학병은 동족 '위안부' 여성과 타자성을 공유함으로써 '일본 군대'라는 집단으로부터 탈각하여 식민지인으로서 자신을 정체화하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학병은 동족 여성인 '누이'를 성애화함으로써 남성 집단으로 귀소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위안부'에 대한 학병의 동류의식의 나약함은 이들을 동질적으로 만드는 폭력적 힘, 즉 제국의 통치와 전쟁이 끝나는 순간 연대감이 쉽게 사라지는 데서도 확인된다. 포로수용소에서부터 시행된 학병의 국민국가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혹은 해방공간의 건국 담론에서 '위안부' 여성은 더 이상 '민족의 제물'이 아니라 '창녀 습성'을 버리지 못한 '민족의 수치'로 여겨졌다. 다만, 식민지시기에 태어나 제국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학병이 자신 또한 조국의 타자임을 자각하고 성찰할 때 '위안부'와의 동류의식은 지속될 수 있었다. 곧, 학병의 서사에서 '위안부'는 그들의 정체성을 (재)구축하게 하는 타자로서 나타난다. (pp. 95-96)

#### 2.1. '위안부' 잡사(雜事)와 '유사 사건'의 구성

#### 2.2. '제한적 교신자'와 금기된 나레이터

#### 2.3. 학병의 '서사 정체성'과 구성된 타자로서 '위안부'

#### 3.1. 어문역(語文域)의 검문과 '위안부' 서사의 상호텍스트성

#### 3.2. '위안부' 서사를 둘러싼 제국-식민지 남성의 분열과 공모

#### 3.3. 조선인 '위안부' 수기의 재번역과 '통약불가능성'

### 3. 국경을 통과하는 '위안부' 서사와 되받아쓰기의 양가성

귀환자들의 목격담  
수기, 회고, 르포, 전쟁기록물



발췌, 수집, 편집, 번역  
재구성, 변형, 짜깁기 ...

3.1. 어문역(語文域)의 김문과 '위안부' 서사의 상호텍스트성

3. 국경을 통과하는 '위안부' 서사와  
되받아쓰기의 양가성



센다 가코(千田夏光)

- 『從軍慰安婦』 (1973)
- 『續 · 從軍慰安婦-償われざる女人八万人の慟哭』 (1974)
- 『從軍慰安婦·慶子』 (1981)



임종국

- 『친일문학론』 (1966)
- 『다큐멘터리 女子挺身隊』(1973)



3.1. 어문역(語文域)의 김문과 '위안부' 서사의 상호텍스트성

3. 국경을 통과하는 '위안부' 서사와  
되받아쓰기의 양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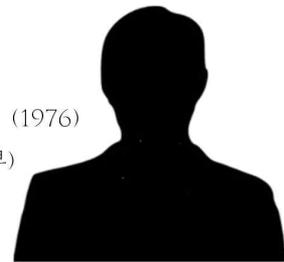


센다 가코(千田夏光)

- 『從軍慰安婦』 (1973)
- 『續 · 從軍慰安婦-償われざる女人八万人の慟哭』 (1974)
- 『從軍慰安婦·慶子』 (1981)



『天皇の軍隊と朝鮮人慰安婦』 (1976)  
(천황의 군대와 조선인 위안부)



김일면(金一勉)



임종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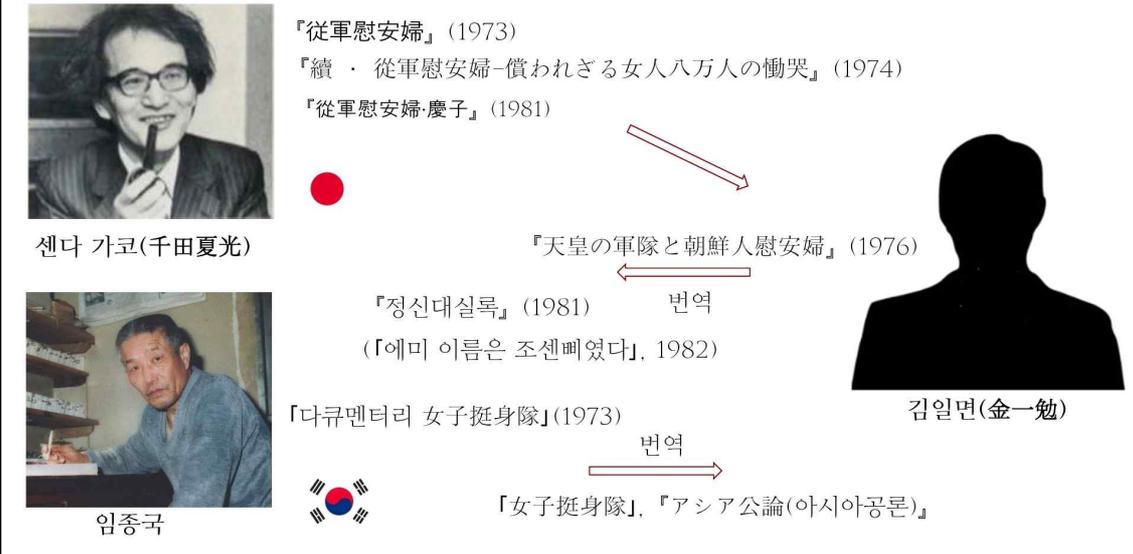
- 『다큐멘터리 女子挺身隊』(1973)



번역  
『女子挺身隊』, 『アジア公論(아시아공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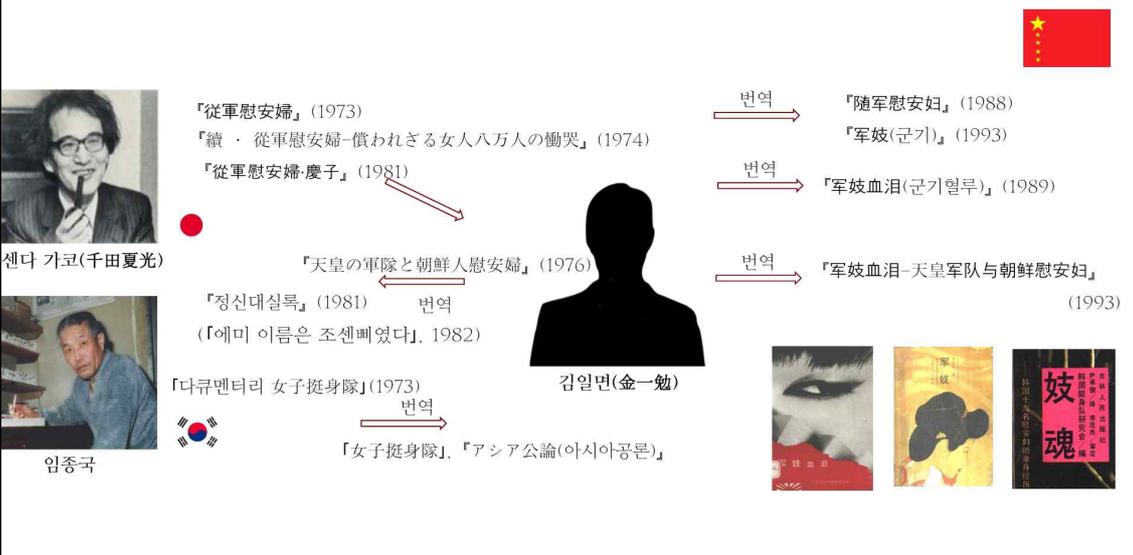
3.1. 어문역(語文域)의 김문과 '위안부' 서사의 상호텍스트성

3. 국경을 통과하는 '위안부' 서사와  
되받아쓰기의 양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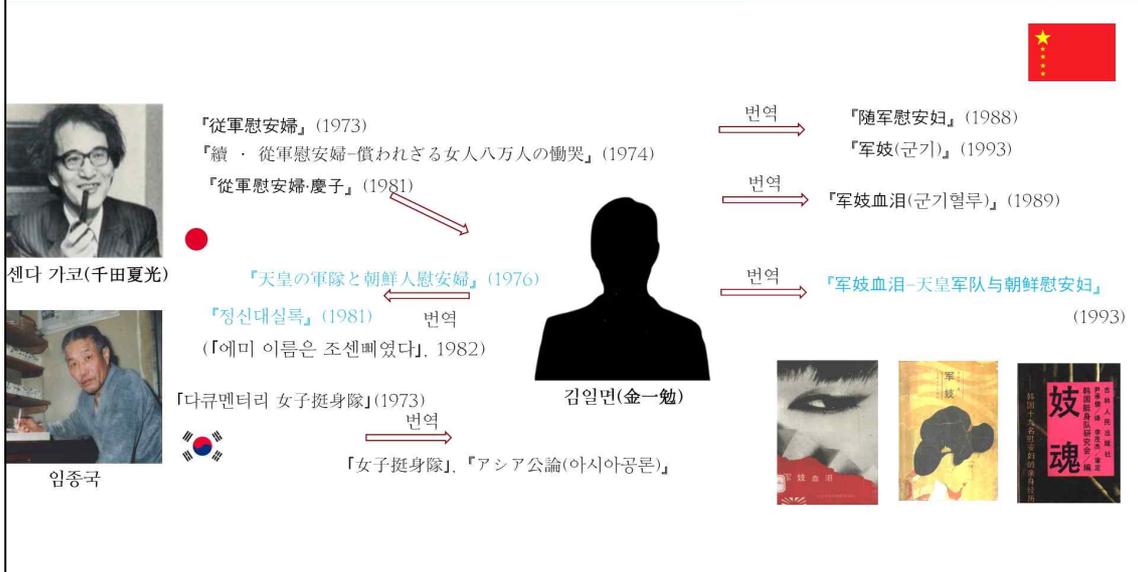
3.1. 어문역(語文域)의 김문과 '위안부' 서사의 상호텍스트성

3. 국경을 통과하는 '위안부' 서사와  
되받아쓰기의 양가성



3.1. 어문역(語文域)의 김문과 '위안부' 서사의 상호텍스트성

3. 국경을 통과하는 '위안부' 서사와  
되받아쓰기의 양가성



3.1. 어문역(語文域)의 김문과 '위안부' 서사의 상호텍스트성

3. 국경을 통과하는 '위안부' 서사와  
되받아쓰기의 양가성

**천황의 군대와  
조선인 위안부**

- 제국의 최하위주체인 조선인 '위안부'를 통해 '천황의 군대의 야수성'을 폭로
- 경제 부흥 이후 군국주의 향수 경계

**정신대 실록**

- '위안부'를 통해 일본 제국의 폭력성과 잔악성을 폭로하는 민족의 역사 쓰기

**군기 혈루**

- 여성 차별적 규범을 재 생산하면서 '위안부'를 연민의 대상으로 인식

「한국 빼는 병이 걸리지 않아서 좋더군. 상급들은 일본 창녀, 우리들은 한국 빼, 그런데 상관녀석들이 몰래 우리들 영역을 침범하잖아.」

이같이 말할 정도로 한국인 위안부가 좋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 하나는 좀 잘난 척 하는 일본 빼는 사병에게 매우 냉담하다는 것.

그 둘째는 한국 빼는

무엇을 하건 일본 여자보다는 훌륭하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 애써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거기다가 나이가 젊은 만큼 체격도 좋고 솔직하고 순정이 넘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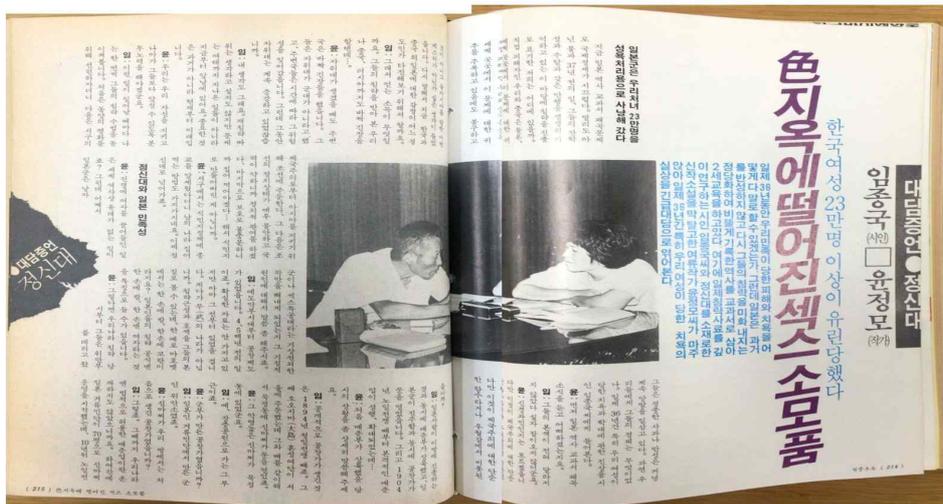
(중략)

전선의 사병과 한국 빼와는 어느 의미에서 차원을 같이하고 있었고 사이 좋은 동반자 같았다.

- 『정신대실록』, p. 173.

어디까지가 병사 회고이고 어디까지가 '김일면-임종국'의 논평인지 알 수 없는 위의 인용문처럼, 일본군 병사의 시선과 민족 남성의 시선은 분리할 수 없을 만큼 뒤섞여 있다. 종주국 하급 병사가 자국 여성에 대한 배신감을 조선인 '위안부'를 통해 해소하고 있다면, 민족의 남성은 '인기가 더 좋은' 조선인 '위안부'에게서 민족적 우월감을 찾으려 한다. 이들은 완전히 성애화된 타자로서 '위안부'를 인식한 후, 제국 내부의 남성 권력 관계 또는 제국-식민지 남성의 권력 관계를 조선인/일본인 '위안부' 관계에 투사하고 있다. '김일면-임종국'이 보인 일본에 대한 적개심에도 불구하고 병사의 증언과 이들의 서술이 위화감 없이 뒤섞일 수 있는 것은 양자의 시각이 제국으로부터 피식민 민족으로만 이동할 뿐 근저에 깔린 여성 인식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결국 '김일면-임종국'은 제국 병사의 시선을 오직 민족적 적대선 저쪽에서 이쪽으로 번역하는 결과를 낳았다. (p. 123)

최근 후기 식민주의의 관점에서 임종국에서 윤정모로 이어지는 민족-남성 주체 수립의 기획이 '위안부' 담론을 자원 삼아 이루어졌음이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점은 임종국의 '위안부' 담론이 제국 남성의 기억을 '번역'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전후 구 제국-식민지 남성의 주체 (재)수립이 타자인 '위안부'를 매개로 거울상처럼 마주보고 있는 것이다. 즉, 남성 주체의 (재)수립은 식민지의 가장 하위 주체인 '식민지-하층-여성' 섹슈얼리티의 타자화 위에서 공모하고 분열하면서 구성되었다. 이는 국경을 넘나들던 전장의 기억이 전후 국가 담론의 재구축 과정에서 고착화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한국의 경우 '위안부'를 통한 남성 주체의 확립은 '위안부'가 민족 남성을 재생산함으로써, 곧 '에미'가 됨으로써 '조선' 민족 내부로 복귀하는 서사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를 통해 완결된다. (pp. 124-125)



3.2. '위안부' 서사를 둘러싼 제국-식민지 남성의 분열과 공모

3. 국경을 통과하는 '위안부' 서사와  
되받아쓰기의 양가성



3.3. 조선인 '위안부' 수기의 재번역과 '통약불가능성'

3. 국경을 통과하는 '위안부' 서사와  
되받아쓰기의 양가성



『동아일보』, 1966.12.22.

## • 『女の戦記』 재번역 양상

	저자/편자	번역자	서명	발행사	발행연도
	近代戦史研究会 篇	-	女の兵器- 朝鮮人慰安婦の手記	浪速書房株式會社	1965
1	日本近代戦史研究会 編	柳根周	戦場の 女人裸像	現代思潮社	1966
2	힐테가르트 코호	박헌태	죽음의 演奏	白眉社	1981
3	힐테가르트 코호	유근주·조향	인간 사냥꾼	글벗사	1988
4	신동숙 편	신동숙	슬픈여인의 나상	해맞이	2003

- 돈과 관련된 부분 삭제
- '애국봉사대'로서 사명감이 나타나는 부분 삭제
- 번역자의 말 첨가 (예: "그러나 과연 우리는 어느 나라 민족이더냐?")

주인 남자나 여자는 대문간 방에 딱 앉아서 지키고 살림을 거기서 했다. 우리들이 도망갈까봐 지킨다고 문 가까이에 있었던 것이다. 대청을 끼고 주인방이 있고 방 다섯 개가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 늘어서 있었다. …… 그 여자가 자기네더러 '오토상', '오카상'이라고 하라 했지만 그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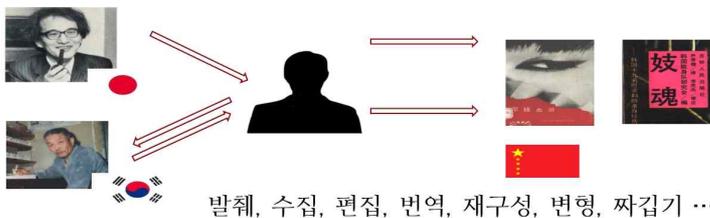
-김분선, 『공장에 가서 돈을 벌려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소 엮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2, 한울, 1997, p. 105.

낭만화된 군국주의적 서사에 경계심을 가진 민족 남성은 이를 탈식민 민족주의로 전유하였으나, 이러한 개입도 '위안부'의 삶과 목소리를 드러내지는 못했다. 민족 남성의 되받아쓰기는 구 제국의 식민주의를 전유하여 민족의 '실록' 쓰기를 수행하지만, 이는 다른 한편으로 '위안부'를 타자화함으로써 민족/국가를 재확립하는 제국 남성의 거울상이 됨으로써 불완전한 전유에 그치게 된 것이다. 이 구조 속에서 '위안부'는 다시 한 번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p. 155-156)



귀환자들의 목격담, 수기, 회고, 르포, 전쟁기록물

2. 국민국가의 형성과  
'목격-침묵'의 이중 담론



발췌, 수집, 편집, 번역, 재구성, 변형, 짜깁기 ...

3. 국경을 통과하는 '위안부' 서사와 되받아쓰기의 양가성

4. '위안부' 서사의 탈국경화와 기대지평의 변화



공개 증언자의 등장

4. '위안부' 서사의 탈국경화와 기대지평의 변화

피해자의 등장은 주된 담론을 목격자의 증언에서 생존자의 증언으로 전환한 '사건'이지만, 오랜 시간 누적되어 온 기존의 서사들은 피해자 등장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쳤다. 단절적으로만 바라볼 경우 중요한 장면들을 놓칠 수 있다. 최초의 공식 증언 이전에 국가 바깥에서 등장한 피해자가 있었으며, '위안부' 운동이 본격화되는 데에는 초국적인 문제의식과 여성연대의 장이 있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이러한 장면들은 오늘날 '위안부' 운동의 역동성과 서사의 유동성이 위축되고 경직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성찰하게 해 준다.

목격자(testis)의 증언

생존자(superstes)의 증언

4.1. 미귀환 '위안부'와 텍스트의 포획

4.2. '침묵'의 양의성과 '공개 증언자' 서사의 이면

4.3. '위안부' 서사의 유동성과 피해자 증언의 물화

4.1. 미귀환 '위안부'와 텍스트의 포획

4. '위안부' 서사의 탈국경화와 기대지평의 변화

국경 바깥에서 등장한 '위안부' 생존자



배봉기(1914~1991)

-1944, 오키나와 도카시키팀  
-포로수용소 이탈, 방황, 오키나와 정착  
-1972, 오키나와 반환, 강제 퇴거 대상이 되자 체류신청



노수복(1921~2011)

-1942, 부산근교에서 강제 연행, 싱가포르 위안소  
-포로수용소 이탈, 말레이시아를 거쳐 태국 정착  
-1984, KBS이산가족찾기 신청



배옥수(1927~)

-1944년, 업자에 속아 버마 전선 위안소로 보내짐  
-포로수용소 이탈, 캄보디아 거쳐 사이공 정착  
-월남 패망 후 LST타고 귀국(1975), 1984년 한국 사회에 알려짐

4.1. 미귀환 '위안부'와 텍스트의 포획

4. '위안부' 서사의 탈국경화와 기대지평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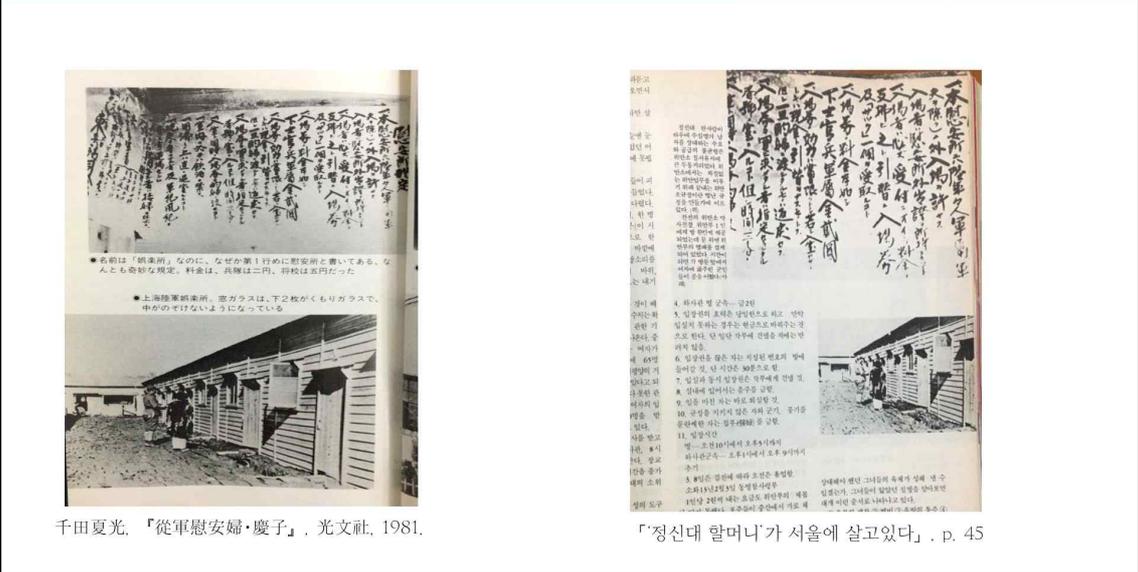


「아들아,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

「나는 지옥의 조센삐였다」

4.1. 미귀환 '위안부'와 텍스트의 포획

4. '위안부' 서사의 탈국경화와 기대지평의 변화



千田夏光, 『從軍慰安婦・慶子』, 光文社, 1981.

「정신대 할머니가 서울에 살고있다」, p. 45

4.1. 미귀환 '위안부'와 텍스트의 포획

4. '위안부' 서사의 탈국경화와 기대지평의 변화

**빨레·탄약 운반...밤이면 위안부 '본업'**

이와이데 분영북교수 '정신대' 원혼의 말자취 취재기

**타이 핫차이**

북한에서 활동하는 위안부들은 밤이면 빨레와 탄약을 운반하는 일을 맡는다. 이 때문에 밤이면 위안부들의 본업은 빨레와 탄약 운반이다. 이와이데 교수는 '정신대' 원혼의 말자취 취재기에서 이 사실을 보도했다. 위안부들은 밤이면 빨레와 탄약을 운반하는 일을 맡는다. 이 때문에 밤이면 위안부들의 본업은 빨레와 탄약 운반이다. 이와이데 교수는 '정신대' 원혼의 말자취 취재기에서 이 사실을 보도했다.

**독감길 '사냥' 각계 동맹**

일본은 지난해 겨울철 독감으로 20만 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정신대' 원혼의 말자취 취재기에서 이 사실을 보도했다. 위안부들은 밤이면 빨레와 탄약을 운반하는 일을 맡는다. 이 때문에 밤이면 위안부들의 본업은 빨레와 탄약 운반이다. 이와이데 교수는 '정신대' 원혼의 말자취 취재기에서 이 사실을 보도했다.

**군대 동원 처녀사냥 예사...물길던 아낙 못에 연행도**

**한나절 수십명에 곤욕...반항하면 머리채 끌고다녀**

**졸담배에 흰 손수건 쟁기는 결벽증 "한국말 잊었다"**

윤정옥, 『'정신대' 원혼 서린 발자취 취재기(3) 타이 핫차이』, 『한겨레』, 1990.1.19.

4.2. '침묵'의 양의성과 '공개 증언자' 서사의 이면

4. '위안부' 서사의 탈국경화와 기대지평의 변화

朝鮮人從軍慰安婦問題を考える会, 『朝鮮人從軍慰安婦問題 資料集 II』(第4版), 1991.11.8.  
 朝鮮人從軍慰安婦問題を考える会, 『朝鮮人從軍慰安婦問題 資料集 III』, 1992.

金文淑, 『朝鮮人軍隊慰安婦-韓國女性からの告發』, 明石書店, 1992.  
 尹貞玉 外, 『朝鮮人女性がみた「慰安婦問題」-明日をとともに創るために』, 三一書房, 1992.

김학순의 증언은 일본 정부의 역사부정과 그에 대한 항의의 맥락 속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증언의 의의가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부각된 경향이 있다. 또, 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라는 뚜렷한 목표에 역량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는 다분히 한일 양국 관계의 지평에서 이해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공개 증언을 전후한 '위안부' 담론장은 다양한 주체에 의해 매우 역동적이고 초국적으로 전개되었다. ... 1990년 10월 오키나와의 중군위안부 추모제, 1991년 5월 도쿄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여성 역할 심포지엄>, 8월 <아시아·태평양지역 전후 보상 국제 포럼> 등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공론장이 되었다.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여성 역할 심포지엄>의 경우 남북 여성 대표가 분단의 벽을 넘어 회합함으로써 국내외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등에 걸친 매춘관광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당시 여성계의 논의는 '아시아'라는 지평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더하여 1990년대 초기 '위안부' 담론장은 국경을 넘어 형성되었고, 증언 텍스트 또한 매우 빠르게 일본어로 번역되어 나갔다.(PP. 185~186)

그런데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는 회원들의 칼럼을 살펴보면, '위안부' 문제 공론화 초기 국내에서 형성된 여론과는 다소 다른 시각이 보인다. 한국사회에서는 "해방된 지 반 세기가 지난 지금에 와서야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하며 일본 정부에 해결을 주장하게 된 것은 민족적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라는 반성이 일어났다. 즉, 해방 후부터 최초의 공식 증언에 이르는 '침묵의 시간'은 한국사회의 정조 이데올로기와 여성 섹슈얼리티 억압의 강도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

그런데 이때 눈에 띄는 것은 자성의 내용으로서 "잊는 것이 배려(忘れることが思いやり)" 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요컨대, '침묵'의 시간에는 억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선의와 배려도 존재했다.

## '잊어주는 선의'의 딜레마

위안소의 범죄성을 고발하는 일은 '위안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니 '잊어주는 것'은 배려이자 선의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자칫 일본군의 범죄마저 잊을 수 있다. 또, '잊는 것'이 배려라고 여기는 것은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성폭력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피해 사실을 밝혀야 할 이유는 없다.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고 해서 떳떳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오히려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즉, '잊어주는 선의'의 딜레마는 전시 성폭력에 대한 고발이 피해자의 '커밍아웃'을 통해 이루어지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책임 부정과 사료의 부족,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투쟁 등으로 인하여 당대 운동의 지형은 '살아있는 증거'로서 피해자가 등장하도록 추동했고, 피해자의 등장은 '위안부' 운동의 강한 동력이 되었다. 김학순의 증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존의 인식틀을 바꾸고, 그것이 여성의 '수치'가 아니라 '피해'임을 분명히 했다는 의의는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삶의 국면에서 차별적 시선은 여전히 존재했고, 피해자가 피해를 증언하기 위해서는 2차 피해뿐 아니라 주변에 자신의 과거가 밝혀지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구도가 부지불식간에 형성되었다.

4.3. '위안부' 서사의 유동성과 피해자 증언의 물화

4. '위안부' 서사의 탈국경화와 기대지평의 변화

김 수  
정권소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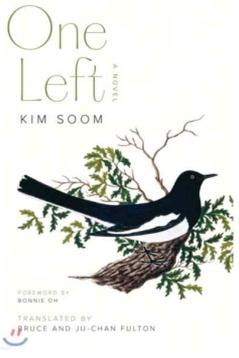
다들까 중간치보다 조금 큰 다슬기가  
간 데덜러 있다. 그녀는 그 다슬기를 집  
주.   
유월 환상에 붙어한테도 꿈할거런이 느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녀는 알고  
얼마나 악착같이 버티는지. 지우개장

그게 70년도 더 전이다. 그게 벌써.....

70년도 더 전 고향 마을 강에서 다슬기를 잡던 그녀는 난태없이  
나타난 사내들에게 붙들려 강둑 위로 끌려갔다.  
한 명은 그녀의 다리를 잡고 한 명은 팔을 잡는다. 그녀를 트럭 짐칸으로  
끌었다. 그녀는 놀이 뒀다가 세계 떨어졌다. 대머섯 명의 소녀가 그곳에 앉아  
있었다.<sup>24</sup>

사람들이 냐이였는지, 다섯이였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사내들은  
자기들끼리 일본말을 했다.  
소녀들을 대구역에서 하월빈역까지 안출한 사내들 그들 중 하나  
다.  
죽일까 싶어서<sup>25</sup> 그녀는 자신을 어디로 데리고 가려는 것인지 묻

24 김수, 『한 명』,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 한국 장민대 문제 대학원석사  
논문, 1993. 최영은 할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작가의 소설적 상상력을 재구성함.  
25 김수, 『한 명』,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3』, 한국 장민대 문제 대학원석사  
논문, 1999년.



FOREWORD BY  
BONNIE OH  
TRANSLATED BY  
BRUCE AND JU-CHAN FULTON

4.3. '위안부' 서사의 유동성과 피해자 증언의 물화

4. '위안부' 서사의 탈국경화와 기대지평의 변화

언젠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소설을 쓰고 싶었지만, 써지지 않으면 쓸 수 없겠구나 생각했다. '한 명'이라는 제목이 오고, 구해지는 대로 증언록을 찾아 읽으면서 소설이 써지기 시작했다. 두려웠다. 피해자 한 분이 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조급해졌다. 내 소설적 상상력이 피해자들이 실제로 겪은 일들을 왜곡하거나 과장할까봐, 피해자들의 인권에 손상을 입힐까봐 조심스럽고, 또 조심스러웠다.

-김수, 『작가의 말』, 『한 명』, p. 285.

증언은 하나의 서사로 통합되면서 경험의 특수성이 소거되거나 다른 맥락 속에 위치지어지게 된다. 증언자의 개인어, 방언, 비언어적 표현 등은 전지적 작가의 서술 속에서 용해되었고, 증언의 서사적 구성을 통해 발생하는 개별적 의미 또한 많은 부분 삭제되었다. 말하자면, 『한 명』이 증언을 통해 서사를 구성하려는 의도는 증언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역행한다. 증언 연구는 증언자 개인의 독특한 표현 방법뿐 아니라 서사의 구조화 방식까지 증언의 일부로 인식하는 데까지 이르렀지만, 『한 명』은 확장된 증언을 화소 단위로 분절하여 절취하는 결과를 빚는다. 여기서 문제 삼고 싶은 바는 증언을 “왜곡하거나 과장”했다는 것이 아니라, 소설화되는 과정에서 변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에도 굳이 각주를 붙여야 하고, 또 각주에 집중하여 읽어 내고자 하는, 그러한 ‘읽기-쓰기’ 행위에 전제되어 있는 증언에 대한 인식이다. 작가와 연구자들의 윤리 의식과 별개로 증언에 대한 왜곡이나 과장에 대한 두려움은 증언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려는, 즉 증언을 성화(聖化)하는 태도와 맞닿아 있다. (p. 219-220)

증언을 ‘보존’하겠다는 강박은 『한 명』이 제기한 또 다른 문제. 곧 생존한 증언자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가까운 미래에 대한 상상 또한 불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소설은 그간 자신이 ‘위안부’ 피해자라고 밝히지 못한 주인공 풍길의 용기를 내어 마지막 한 명 남은 생존자를 만나러 가는 데서 끝난다. 곧, 마지막 ‘한 명’ 이후에 또 다른 ‘한 명’을 등장시킴으로써 마지막 한 명의 시간을 ‘유예’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말은 증언의 당사자성과 원본성에 집착하는 한 당사자가 없는 ‘위안부’ 문제/운동을 상상할 수 없게 되는 필연적인 귀결이다. 앞서 보았듯, 증언 연구의 시각은 이미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증언이 조사자와 증언자의 상호소통을 통한 생산물이며, 증언의 진실성은 “증언자의 개인적인 권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자와 증언 채록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청중이 함께 참여하는 집단화된 저작권에 의해 확보”될 수 있다는 인식에 도달했다. 그렇다면 김숨의 『한 명』은 2000년대 초반보다 2010년대 ‘위안부’ 담론장이, 그리고 사회학적 연구보다 문학적 상상력이 오히려 증언의 본질주의에 더 강하게 붙들려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텍스트라 하겠다. (p. 220-221)

(가) 최갑순의 증언(증언집 4권, pp. 156-157)

"[강원도 여자랑 나랑] 두만강을 건너는데, 팽팽팽팽 도는 물이 있데요. 거그 들어가든 그만이래요. [그러니까 낮에] 와가꼬 구경을 해. 워디로 가든 물이 안 차고, 워디로 가든 물이 짙으고, 뭐 그것을 봐야만 밤에 가지요.

(나) 『한 명』 (p. 160)

팽팽팽팽 도는 물이 있었다.<sup>249</sup> 팽팽팽팽, 팽팽팽팽, 맷돌이 돌아 가듯.

(다) *One Left*

The water whirled round and round,<sup>12</sup> reminding her of rotating millstone. It was the Tuman River, people told her.

맥락의 변화를 차치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팽팽팽팽'이라는 말이 증언 효과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많은 논자들이 『한 명』에 나타나는 '증언-허구' 사이의 긴장관계를 고평하였으나, 이 장면에서 '긴장'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증언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314'라는 각주에서 비롯된다. 이는 '서명'을 통해 아우라를 발생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이 경우 증언은 의미 효과를 상실한 채 물화된다. 물화 현상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앞의 인용문이다. (다)는 증언을 "The water whirled round and round"으로 번역한 뒤, 각주 번호 '12'를 붙여 놓았다. 해당 문장을 '증언'이라고 할 때, 독자는 어떤 증언을 청취할 수 있을 것인가. 기실 이 문장은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하여 아무 것도 증언을 하지 않는다. 심지어 (다)는 증언과 각주가 매칭 되지도 않는다. 달리 보면, 애초 '팽팽팽팽'이 증언하는 바가 없으므로, 각주가 매칭되지 않는 것이 역설적으로 중요하지 않은지도 모른다. 여기서 문제적인 지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의 독해에 증언의 아우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증언의 원본성에 대한 집착과 본질주의가 거꾸로 증언을 어떻게 소외시키는지 매우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문학이 성취할 수 있는 '증언 소설'이란 무엇인지에 고민하게 만든다. (pp. 227-228)

이상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닐 것이라 기대한다.

- '위안부' 담론이 국경을 유동하면서 재구성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국가주의적 문제로 거듭 되돌아가는 '위안부' 담론의 환원 구조를 탐구축할 수 있다.
-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된 지 삼십여 년에 이르는 현재의 시점에서 대항담론으로서 구축된 '위안부' 서사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다.
- '증언 문학'의 새로운 개념적 정의에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한다. '위안부' 서사를 통해 고찰할 때 증언 문학은 기억의 역사화에 저항하는 것이었다. 증언 문학은 증언 그 자체를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의 유동성과 운동성을 담을 수 있는 매체가 됨으로써 도달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토론문] 일본군 '위안부' 서사 연구

송혜림 (연세대학교)

지금까지 '위안부' 연구는 '위안부'를 둘러싼 민족, 젠더, 계급의 억압적 지형을 가시화해왔다. 이지은 선생님의 연구의 의의는 '위안부'를 둘러싼 다층적인 지형에 시공간의 축을 더욱 예리하게 버린다는 데 있다. 이 연구는 '위안부'가 실제 동원되었던 전시상태와 '위안부' 서사가 형성되기 시작한 전후의 시간차에 주목하는데, 이는 대동아 전쟁 당시 유동하는 전선(front line)이 개별 국가의 국경(border)로 고착화되는 영토의 재편을 사유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시공간에서는 국가주의와 민족주의가 국가 성립과 '국민'의 주체성을 규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원된다. 한국에서 일제 식민의 역사와 참전의 서사는 제국의 폭력에 휩박받은 선량한 민족에 기반하면서 동시에 이에 굴복하지 않은 강인한 '남성성'의 서사로 구축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 및 민족 주체 형성의 근저에 공고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놓여 있었음은 자명하다. 이는 이지은 선생님의 분석처럼 일본과 한국의 '위안부' 서사가 상호간의 '되받아쓰기' 과정에서 파열 없이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위안부'가 타자화되는 것은 그것이 제국의 병사이든, 피식민국의 병사이든 동일했고, 그렇게 '위안부'의 상은 제국 내부의 남성의 시각과 제국-식민지 남성의 시각이 뒤얽힌 채 형성된다. 숭고한 존재로 추앙되는 '누이'와 성애화된 존재로 낙인찍힌 '창부'는 성차별 이데올로기의 다른 극단에 위치할 뿐, '위안부'에게 어떠한 이름으로도 엄연한 민족의 자리를 내어준 적 없었다. '위안부'에 대한 기억의 '번역'을 추적하면서 이 연구가 동시에 보여주는 것은 영토적 혹은 관념적 차원의 국경 대신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국경의 힘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박사논문에서 상세히 보여주는 한국 '바깥'의 세 명의 '위안부', 특히 배봉기의 삶은 구체적인 관계성 안에서 상이하게 실감되는 국경의 양상을 보여준다. 국경은 물리적인 고립의 조건이 되기도 하지만 어느 곳도 자신이 귀환하고 뿌리내릴 수 없는 땅이라고 몸과 마음을 감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동시에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소속감을 느낄 수 없는) '위안부'의 몸들이 경계를 이월해 탈국경화·탈영토화된 연대를 꿰어내는 토대가 되었다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지은 선생님의 지적처럼 초기 '위안부' 서사가 '목격담'의 형식이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프리모 레비는 홀로코스트의 '완전한 증인들'은 죽음으로 돌아오지 못했거나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가라앉은 자들'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절멸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던 유대인 수용소와 위안소를 나란히 병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서술했듯, 제국 및 피식민국의 병사에 의해 서사화되었던 '위안부'의 목격담이 사후의 '침묵'을 만들어냈다는 점을 선명하게 해준다. 즉, 트라우마적 고통이 개별적으로 '증언할 수 없음'의 상태를 만든 것과 별개로 귀환 후 '증언할 수 없음'의 장을 만든 것은 목격담의 양식과 이를 소비한 사회의 공모라는 점이다. 남성중심적인 시각으로 구성된 '위안부' 서사가 '고발'이나 '증언'이라는 윤리적 명분을 내세웠다는 점, 그리고 재구성된 유사사건을 당대 지배 이데올로기와 규범으로 재구성된 형태로 유통시킨다는 것, 여성에 대한 '동정과 연민'을 몸의 '외설적 소비'로 연결한 상업주의 저널리즘을 통해 '위안부' 나아가 '여성'에 대한 '공통감각'을 형성했

다는 이지은 선생님의 지적은 핵심적이다. 이는 또한 '목격담'이라는 형식에 '목격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차등적 믿음을 부과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법정적 증언이 요구하는 증언자의 자격은 합리적 능력과 중립적 위치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체에 대한 믿음은 낙관에 가까우며, 목격담의 서사에 내재된 선택적·해석적 개입과 상호맥락적 구성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는 연구자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역사의 문헌자료뿐만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오직 '목격담'으로만 희미하게 들려오는 존재들이 있다. 남겨진 자료나 떠도는 말들을 검토할 때 그것이 유통되는 방식과 내용을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것은 연구자의 방법론적, 윤리적 책무라고 생각한다.

발표에서 비중 있게 다루지지 못했으나 선생님의 논의에서 더 확장시켜 생각해보고 싶은 사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증언문학'에 대한 논의이다. 증언'에 기반하는' 모든 문학이 증언을 '하는' 문학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광범위하게 통칭되는 '증언문학'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처럼 느껴진다. "'실화'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로 시작되는 서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실'의 비중을 엄밀히 따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증언'을 토대로 한 이야기입니다"라고 할 때는 사실과 서사(재현)간의 일대일 대응 유무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기 마련이다. 여기에는 '구술'(일반적인 말의 영역)과 '증언'(정치적 목적성을 강하게 지향하는 영역) 사이의 규범적으로는 엄격하나 실질적으로는 모호한 경계의 구분이 반복된다. 그리하여 증언에 가해지는 실증주의적 강박이 문학이라는 영역 안으로도 그대로 옮겨져 오는 듯 보인다. 이지은 선생님의 지적처럼, 증언을 물화시키고 과도한 당사자주의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증언문학을 우리는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 그 규정의 틀을 미리 전제하지 않더라도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 것일까? 선생님은 발표에서 증언문학의 의미를 '기억의 역사화'에 저항한다는 데서 찾고 있다. 이질적이고 다층적인, '사사화'된 기억을 '기억'으로, 일원화되고 평준화되는 공식화된 '역사'와 대비시키고 있는데, 이 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일은 연구에서도 문학에서도 어렵게 느껴진다. 박사논문에서는 김숨의 <한 명>(2016)과 <흐르는 기억>(2018)을 대비시켜 증언문학이 지향해야 하는 바를 제시해주고 있긴 한데, '증언문학'의 규정과 그 지향점에 대한 선생님의 보충적 설명을 듣고 싶다.

'증언하는' 문학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한편에는 여전히 당사자의 증언을 폄하하는 역사수정주의를 의식하게 된다. 역사수정주의와의 관계 속에서 증언의 당사자주의와 본질론주의적 태도에 대한 대처는 더욱 난감해지는 듯 하다. '위안부' 운동이 당사자 증언을 앞세워 운동을 구성했던 이유도 역사부정·수정론에 대항하고 대중의 공감과 지지를 시급하게 동원해야 하는 전략 때문이었다. 그러나 증언에서의 과도한 당사자주의에 대한 문제는 그것이 비단 증언의 확장성을 저해한다는 데에만 그치지 않는다. 증언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 곧 증언자를 부정하고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형태로 가해진다는 것이다. 당사자의 고유한 경험(대부분은 피해라고 말할 수 있는)을 존중하는 것과 그것으로 인해 가해질 공격과 고통의 모든 책임을 짊어지게 하는 형태와 혼동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위안부' 증언자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 다종한 국가폭력의 희생자가 결단 끝에 낸 용기있는 목소리가 폄훼와 부인의 역풍을 다시 고스란히 혼자 감내해야 하는 사후적 고통을 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된다. 그렇다면 증언이 가진 저항적 정치성을, 이 모든 구속들 속에서 나눠가지면서도 역사수정주의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보고 싶다.

## 제국일본의 성폭력 시스템 관계 자료집 시리즈 해제:

『식민지 조선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료집Ⅳ 국제연맹 동양여성아동매매 실지조사단  
과 제국 일본의 인신매매』 (동북아역사재단, 2022)

박정애(동북아역사재단)

### 1. 일본군‘위안부’제도와 공창제 정쟁을 넘어

1932년 1월 일본군의 제1차 상하이 침략 시기부터 개설되기 시작한 일본군 위안소는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래, 일본군의 제2차 상하이 침략, 난징학살을 거치면서 조직화, 체계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난징학살 시기 중국 현지 여성을 대규모로 강간한 일본군의 잔학행위가 국제사회에서 비난의 표적이 되면서 일본군·일본정부가 국제사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는 것이다.

그 방향은 위안소 개설을 위한 여성의 모집, 이송, 배치, 관리 등을 정밀하게 시스템화하여 국제사회의 시야에서 ‘위안부’ 문제를 은폐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1938년 3월 4일 육군성 부관이 통첩을 내어 ‘파견군이 모집을 통제하여 담당 인물은 주도 적절하게 선정하고, 그 모집실시는 관계 지방의 헌병 및 경찰 당국과 긴밀하게 연계’하라고 명령했다는 사실은 두루 알려진 바다. 이는 ‘군의 위신을 지키고 사회문제에 실수가 없도록 배려’하기 위한다는 명분이 덧붙여 있다. 이보다 앞서 1938년 2월에는 내무성 경보국장이 「지나 도항 부녀의 취급에 관한 건」을 발령하여 ‘전쟁터로 가는 여성의 모집주선 등은 여성 매매에 관한 국제조약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점이 있다’고 우려하고 경찰이 명심해야 할 도항 여성 관리 방침을 정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여성 매매의 혐의가 있어도 ‘전쟁터로 가는 여성의 문제’는 ‘현지의 사정을 감안할 때 필요하고 부득이한 일’이라고 판단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경찰의 단속 방향이 ‘창기와 기타 사실상의 추업(醜業) 일을 하는 여성’의 도항 금지가 아니라 ‘경찰 당국이 특수하게 고려하여 실정에 즉시 응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정해졌던 것이다. 이 모든 조치는 ‘제국의 위신과 황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이 있었다<sup>14)</sup>.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운용에는 ‘제국 일본’, 그러니까 일본과 그 식민지, 조차지, 위임통치 지역의 일제 공권력, 전쟁터 및 점령지의 일본군이 개입되어 있었다. 일본군‘위안부’ 제도가 조직화, 체계화되었다는 말은 이 제도가 노골적으로 일본 국내외 법을 어겼다는 말과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당대 국제법 및 제국 일본 안의 법과도 충돌하지 않는 형식을 띠면서 전시 성동원 정책을 시행해나갔다는 의미가 된다. 효율적인 전쟁 수행을 위해 일본군이 여성의 성을 이용한다는 반인도적 여성 폭력 정책을 당

14) 이상 언급된 자료들은 동북아역사재단 편, 『식민지 조선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료집 I: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도항 통제(번역·해제 편)』, 동북아역사재단, 2020, 434-437쪽 참조.

대 일본군과 일본 정부는 형식적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제도화의 강력한 배경으로 소환되는 것이 근대 일본의 공창제(公娼制)이다. 공창제는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전사(前史)로서 언급되기도 하고<sup>15)</sup>, 일본군·위안부·제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동일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책임질 부분이 전혀 없다는 주장<sup>16)</sup>이 있는 한편,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성 착취 제도를 국가권력으로 관리한 일본 정부의 책임이 더욱 무겁다는 비판<sup>17)</sup>이 있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일본군·위안부·제도는 공창제와 같아서 일본의 가해 책임이 없다는 역사부정론자들의 주장이나 여기에 대립하여 일본군·위안부·제도가 공창제와 달라서 일본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는 이들 사이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기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존재했던 공창제나 일본군·위안부·제도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 2. 19세기 말, 20세기 초 국제사회의 일본 공창제 비판

일제 권력의 성 관리 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국익’ 명분 하의 성 동원과 관리 정책이라는 차원에서 공창제와 일본군·위안부·제도를 탐색해 왔다<sup>18)</sup>. 특히 일본 식민지 사례를 분석하는 연구자의 경우, 일본의 군사 침략과 식민지화 과정에서 일제 권력이 활용하고 정비해나간 성 관리 제도를 구체적으로 해명하고자 했다<sup>19)</sup>. 이들의 문제의식은 공창제나 일본군·위안부·제도가 시기별, 지역별, 정치적 성격별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같다, 다르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주제를 다루는 모든 역사 연구자들이 지적하는 점이 두 제도 모두 국가주의와 식민주의, 가부장주의, 성차별주의, 계급차별주의 위에 성립해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공창제가 국가가 공인한 인신매매 제도이자 노예제도라는 매서운 비판은, 무엇보다 당대 국제사회의 시선 속에서 나왔다. 메이지 정부 성립 직후인 1872년에 일본은 마리아 루스호 사건<sup>20)</sup>을 겪

15)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운동』,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6; 송연옥 외, 『군대와 성폭력: 한반도의 20세기』, 선인, 2012.

16) 秦郁彦, 『慰安婦と戦場の性』, 新潮社, 1999; J. Mark Ramseyer, “Contracting foe sex in the Pacific War”,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65, 2021.

17) 캐롤라인 노마 지음, 유혜담 옮김, 『위안부는 여자다: 여성주의 관점으로 위안부 역사를 복원하다』, 열다북스, 2020.

18) 川田文子, 『戦争と性: 近代公娼制度・慰安所制度をめぐって』, 明石書店, 1995; 小野澤あかね, 『近代日本社会と公娼制度: 民衆史と国際関係史の視点から』, 吉川弘文館, 2010; 林葉子, 『性を管理する帝國: 公娼制度下の「衛生」問題と廢娼運動』, 大坂大學出版會, 2017.

19) 藤永壯, 「植民地公娼制度と日本軍「慰安婦」制度」, 『植民地と戦争責任』, 吉川弘文館, 2005; 송연옥 외, 위의 책; 야마시타 영애 지음, 박은미 옮김, 『내셔널리즘의 틈새에서: 위안부 문제를 보는 또 하나의 시각』, 한울아카데미, 2012; 박정애, 「일본군·위안부」의 강제동원과 성노예: 공창제 정쟁과 역사적 상상력의 빈곤, 『페미니즘 연구』 19(2), 2019

20) 청나라 노동자를 싣고 마카오에서 페루로 가던 마리아 루스 호가 수리를 위해 1872년 7월 일본 가나가와현(神奈川県) 요코하마항(横浜港)에 입항했다. 이때 청나라 노동자 한 명이 탈출하여 영국 군함으로 도망쳤다. 이 문제를 놓고 요코하마 재판소에서 재판을 했던 일본은 청나라 노동자 상황이 국제법 위반인 노예 상태와 같다고 하여 풀어줄 것을 판결했다. 패소한 페루는 일본에도 노예 매매와 같은 예창기 제도가 있다고 항의했고, 일본정부는 형식적이거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어 1872년 10월 태정관 포고 제295호로 <예창기해방령>을 공포했다(송경호, 「마리아 루스 호 사건을 통해 본 메이지 일본에서의 인권 개념 수용」,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21(1), 2022. 참조).

으면서 일본의 예창기 제도가 노예제도라는 국내외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일본정부는 1872년 10월 형식적으로 <예창기해방령>을 공포하고 다음해인 1873년 12월에 도쿄부에서 <가시자시키생업규칙(貸座敷渡世規則)>, <창기규칙>, <예기규칙> 등을 제정하여 근대 성관리 정책을 시작하였다<sup>21)</sup>. 이 법령들이 수 차례 개정을 거쳐 1900년 내무성령 제44호 <창기단속규칙(娼妓取締規則)>으로 귀결되어 일본의 근대 공창제의 틀이 완성되었다. 이후 식민지화가 진행된 지역에서도 성 관리 정책을 시작하여 관동주에서는 1905년 <창기단속규칙>, 타이완에서는 1906년 <가시자시키와 창기단속규칙 표준(貸座敷及娼妓取締規則標準)>, 조선에서는 1916년 <가시자시키창기단속규칙>을 제정하여 각각의 지역 내에서 통일적인 공창제를 성립하였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제국 일본의 법역(法域) 안에서 일정한 공창제가 시행된 것이 아니라 각지의 정치적 상황과 식민사회의 안정화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른 차별적 내용이 반영된 공창제가 완성되었다는 점이다.

한편 구미 사회에서는 19세기 말부터 이슈화된 국제적 인신매매를 배경으로 여성아동매매를 억제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1904년과 1910년, 1921년, 1933년에 이와 관련한 국제협약을 맺고, 각 국가의 조인을 독려해왔다.

일본 국내외에서 일본의 여성아동매매가 문제된 것은 1921년에서 1933년 사이의 일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설립된 국제연맹에서 1921년 여성아동매매 억제를 위한 협약을 채택하고 그 실태조사를 위해 서양과 동양의 여성아동매매 실지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때 일본이 주요 대상국 중 하나였던 것이다. 국제연맹 실지조사의 최종보고서는 1933년 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출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 일본 공창제 하의 소개업 허가제도가 여성아동매매를 합법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때문의 일본 공창제의 반인도적 성격과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국제연맹 주도의 여성아동매매 억제 협약과 일본 조사를 중시했다. 그리고 공창제는 합법이라서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역사부정론자들의 주장은 역사적 실태에 반하는 것이며, 오히려 당대 국제연맹의 평가를 좇아 공창제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sup>22)</sup>.

위와 같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정쟁, 그리고 공창제에 대한 역사적 연구의 흐름 속에서 이 자료집을 기획하였다. 국제연맹 여성아동매매 실지조사위원회는 동양 조사를 하면서 일본 본토와 더불어 식민지 조선과 타이완, 관동주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들과 국제연맹의 최종보고서를 번역해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당대 국제사회의 공창제에 대한 인식과 실태 파악, 그리고 공창제를 노예제와 인신매매 제도로 규정하는 과정들을 공유한다면 일본 공창제를 둘러싼 불필요한 정쟁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21) 早川紀代, 「公娼制とその週辺—東京都を中心に」, 『季刊 戦争責任研究』 17, 1997, 51쪽.

22) 太田健一·桜武加奈子, 「アジアにおける女性・児童売買の歴史と実態: ジョンソン委員会と日本政府の折衝」, 『山陽論叢』 12, 2005; 鈴木裕子, 「東洋婦人児童売買実施調査団と国際連盟における婦人売買問題: 「婦女禁売」問題と日本政府の対応を中心に」, 『日本軍「慰安婦」関係資料集成(下)』, 明石書店, 2006; 小野澤あかね, 『近代日本社會と公娼制度: 民衆史と國際關係史の視点から』吉川弘文館, 2010;

### 3. 1930년대 초 국제연맹 동양여성아동매매 실지조사단의 일본 조사

19세기 말부터 이슈화된 국제적 인신매매를 배경으로 국제사회는 성 착취를 위한 여성아동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구미 각국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여성 이주를 금지해야 할 것으로 규정하면서 각자의 내셔널리즘과 인종주의에 기초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갔다. 20세기에 들어와 국제적인 논의가 시작되어 1904년 5월 파리에서 <백인노예매매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1910년 5월 파리에서 <백인노예매매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로써 인신매매 억제를 둘러싼 국제법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sup>23)</sup>.

제1차 세계대전 후의 폐허 위에서 1920년에 성립한 국제연맹은 자유와 평화, 정의, 인도 정신을 이끄는 국제조직이자 세계의 경찰임을 자임하면서 연맹 규약 제23조에 따라 국제적 인신매매를 감독·관리할 권한을 가졌다. 그리고 1910년의 <백인노예매매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에 기초하여 내용을 보완한 <여성아동매매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을 1921년 9월 제네바에서 체결했다. 여기에는 1910년 국제협약에서 만 20세 미만 여성의 매매를 금지했던 것을 만 21세로 올릴 것과 직업소개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 여성아동의 입출국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 등이 규정되었다. 또 각 체결국은 자국의 식민지나 해외 속령지 또는 그 주권이나 법권에 속하는 지역을 이 협약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시아의 유일한 제국주의 국가로서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의 일원으로 국제연맹에 참여했던 일본은 국제협약에 서구열강과 이름을 나란히 올리는 문제를 '제국의 체면' 문제로 생각했다. 이에 따라 1921년 국제협약에도 당연히 조인해야 할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 협약에 대한 비준은 1925년이 되어서야 가능했다. 연령 제한과 식민지 포함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깊었기 때문인데, 국가 공인의 성매매 제도인 창기제도 하에서 창기가 될 수 있는 법적 연령이 만18세 이상이었기 때문이다(조선에서는 만17세, 타이완에서는 만16세 이상). 이는 국제적인 기준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내용을 합법화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제국의 체면'을 위해 조건 없이 1921년 국제협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했다. 그러나 일본 내무성은 창기 가능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올리면, 일본의 창기제도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반대했다. 창기제도가 무너지면 국가의 부국강병을 담당하는 남성 병사와 노동자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결국 일본은 연령 제한과 식민지 포함 문제를 보류하는 조건으로 1925년에 1921년 국제협약 가입을 비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제국의 체면' 문제를 거론하면서 보류 조항을 철폐하라는 요구가 지속되었고 일본 정부는 1927년에 연령 제한 보류 조항을 철폐한다. 1921년 국제협약에서 일본의 식민지, 조차지 등을 제외하겠다는 보류 조항은 끝내 유지되었다. 일본정부는 식민지 개발의 필요라는 특수상황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23) 인신매매 관련 국제법의 발달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조시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통해서 본 1904년 백인노예매매의 진압을 위한 협정」, 『법학논고』 47, 2014; 조시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통해서 본 1910년 백인노예매매의 진압을 위한 국제협약」, 『법학연구』 42, 2014; 조시현,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법의 발달과정」, 『법과사회』 46, 2014; 조시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역사와 법」, 『법사학연구』 49, 2014. 1904년과 1910년, 그리고 1921년 협약 전문은 이 자료집 II -4. 동양 여성아동매매 조사위원회 보고서 부록 편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국제연맹의 동양 여성아동매매 실태조사에 대한 소식을 접했다. 국제연맹은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상황을 감독한다는 명분으로 1922년 여성아동매매문제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자문위원회는 여성아동매매 실지조사위원회를 꾸려 유럽과 지중해 지역, 미 대륙의 국제적 여성매매 조사에 착수하였고, 1924년에서 1926년 사이 조사를 수행하여 1927년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어서 아시아 지역 조사를 결의하여 1930년 5월 14일 국제연맹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동양 여성아동매매 실지조사에 관한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24)</sup>.

재원은 제1차 조사 때와 같이 미국 사회위생국의 제공으로 마련하였으며, 배스컴 존슨(Bascom Johnson, 미국, 미국 사회위생협회 법률 분야 국장, 위원장), 앨마 선드퀴스트(Alma Sundquist, 스웨덴, 내과 의사), 카롤 핀도르(Karol Pindor, 폴란드, 공사 고문), 슈미든(M. W, von Schmieden, 독일, 사무국장), 마셜(C. E. Marshall, 영국, 서기)로 구성된 동양 여성아동매매 실지조사위원회(이하 존슨 조사단) 위원을 확정하였다.

조사의 목적은 성 착취를 위해 성매매 여성이나 예능인, 또는 예술가 여성을 국외로 데려가는 것을 실태조사한다는 것이었다. 여성매매 문제의 국제적 측면에 한하여 조사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는 했으나 이의 조사를 위해서는 내부적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존슨 조사단은 1930년 10월 9일 마르세이유에 모여 11월 6일 싱가포르에 도착하였으며,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마카오, 필리핀을 거쳐 1931년 2월 14일 중국 광둥에 들어갔다. 5월 28일 중국 조사를 마친 존슨 조사단은 일본의 실질적 식민지인 관동주로 향했으며, 다롄에서 사흘, 경성에서 이틀을 보낸 후 6월 9일에 도쿄에 도착, 7월 12일까지 일본 조사를 마쳤다. 이후 인도네시아로 향한 조사단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조사를 마치고 1932년 1월부터 인도 조사를 한 후 중동과 근동 지역으로 갔다가 3월 16일에 조사를 마무리했다.

조사 방법은 각국의 관계 당국에서 사전 질문지를 보내고 답변을 받은 후 이에 기초하여 실지 조사를 하는 것이었다. 각 장소에 도착하여 증인 청문회를 실시했으며, 민간 단체 관계자와 정부 측 관계자를 만나 면담하고 여성매매 관련 지역, 일본의 경우 창기나 예기 등이 머무는 장소나 구제홈, 병원 등을 답사하였다. 조사는 주로 영어로 수행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현지 통역사의 서비스를 받았다. 조사 결과는 1932년 7월에 1차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국가의 관계자에게 의견을 들었으며, 그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한 내용을 최종보고서로 작성하여 1933년 1월 국제연맹에 제출하였다.

존슨 조사단은 조사 준비 과정에서 해당 국가에게 방대한 분량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국가의 성매매 관리 및 금지 정책, 여성과 아동의 국경 이동 및 관리 상황, 직업소개 관련 업소 및 업자 상황, 여성 교육 및 취업 상황 등 각국은 관련 법령을 정리하고 통계표를 작성하여 존슨 조사단에게 제출했다. 따라서 존슨 조사단의 동양 여성아동매매 조사 내용은 각 지역이 파악하고 있는 성매매 및 인신매매 상황, 이와 관련되었다고 생각되는 법령, 그리고 그 지역 여성의 사회적 존재 조건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이 자료집에 포함된 일본 측 제공 자료들은 1930년의 시점에서 일제 권력이 파악한 조선과 타이완, 관동주, 그리고 일본의 성매매 및 인신매매 실태를 유기적으로 드러내고

24) 이하 존슨 조사단의 조사 목적, 일정, 조사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 자료집 II-4. 동양 여성아동매매 조사위원회 보고서의 서론 참조.

있는 중요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20년대 이후 일본의 공창제는 여성아동매매 억제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에 미치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인하여 일본 국내외에서 노예제도, 인신매매 제도라는 비난에 직면해야 했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정부는 창기제도의 ‘자유폐업’ 조항, ‘예능인 양성 제도’로서의 예기제도의 측면, 제국 일본의 영역 안으로 제한되는 조선인, 일본인 여성 등의 이동 상황을 강조하며 일본의 성관리 정책이 인신매매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설명하기에 전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제국 일본 영역 내의 일제 권력자들의 사전 말맞춤, 실태와 다른 거짓말, 그리고 일본 상황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의 기만과 왜곡을 동원하였다. 이러한 모습이 배어있는 자료들을 살펴보면, 현재 역사부정론자들이 ‘위안부는 공창이고, 여성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어서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는 프레임의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제연맹의 시선과 평가 내용에 일본 공창제의 인신매매 성격이 포착됐다고 하여 당대 국제적 기준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공창제 문제를 볼 필요는 없다. 제국주의 국가 중심의 정부와 비정부 대표들이 모인 자문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제국주의, 인종주의, 엘리트주의, 순결주의의 입장에 있었고, 자문위원회의 활동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이주할 권리, 노동할 권리를 보장받기보다 순수한 피해자나 범죄자로 치부되어 일방적인 구조와 추방, 그리고 처벌 대상이 되어야 했다<sup>25)</sup>. 또한 1921년 여성아동매매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과정에서 애초에 식민지 지역 등을 제외시킬 수 있는 권리를 두었던 것도 국제연맹 회원국들이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국제연맹과 아시아의 유일한 제국주의 국가였던 일본의 긴장 관계, 국제연맹이 구미 국가의 식민지나 일본의 식민지를 다루는 태도의 차이점 등을 염두에 두면서 독해할 필요가 있다.

#### 4. 자료 현황과 자료집의 구성

이 자료집에 수록한 자료들은 한국 국가기록원과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에서 찾아낸 자료들이다. 국가기록원이 분류해놓은 디지털 컬렉션의 <조선총독부 기록물>로 들어가면 그 하위 분류 가운데 <외사>가 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하위 디렉토리가 있는데 그 중 <일본 외무성 국제업무 관계> 안에 일본 외무성이 조선총독부와 존슨조사단의 움직임이나 조사 내용을 공유하는 문서들이 있다.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외무성 관계 자료에는 국제연맹의 여성아동매매 국제협약 체결 과정이나 존슨 조사단의 조사 과정, 그리고 일제 권력이나 사회개혁가, 나아가 성매매 업자들의 대응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국제연맹부인아동문제1건(國際連盟婦人兒童問題一件)은 그 안에 연보, 인사 관계, 국제회의, 동양부녀매매실지조사의 건 등 이 주제와 관계된 대부분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 외 외무성 외교사료관 전전기 외무성기록 2문 조약 4류 국제 평화회의 및 조약 협정 2항 국제연맹 문제(外務省外交史料館戰前期外務省記録 2門 條約 4類 國際平和會議及

25) Megan Ross, “Morality Police: Sexuality Governance at the League of Nations”, the degree of Doctor of Juridical Science Faculty of Law University of Toronto, 2020 참조.

条約、協定 2 項 國際連盟問題), 경보국장 결재서류(1937~1938) 등의 분류 자료에서도 관련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일찍이 이러한 외무성 자료를 엮어 여성문제 자료집을 발간해왔다. 이치가와 후사에게 펴낸 『일본여성문제자료집성』 시리즈 중 제1권 인권 편<sup>26)</sup>에 국제연맹 관계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후지출판은 1997년부터 2010년까지, 13년에 걸쳐 『매춘문제자료집성(買売春問題資料集成)』 총31권과 『성폭력문제자료집성』 총36권을 발간하였다. 이 가운데 제19권과 제20권, 제21권 안에 국제연맹과 존슨조사단, 그리고 일본정부 대응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sup>27)</sup>.

스즈키 유코(鈴木裕子)는 『일본군‘위안부’ 관계자료 집성』 상하권을 펴내면서, 그 하권 제3편에 <동양 여성아동매매실지조사단과 국제연맹 여성아동매매 문제>라는 제목으로 관계자료를 엮고 해제를 작성하였다<sup>28)</sup>. 자료수집을 위해 스즈키 유코는 당시 한국의 정부기록보존소(현재 국가기록원)를 직접 방문하여 마이크로필름을 살펴보았으며, 일일이 탈초하여 자료집에 수록하였다. 본 자료집의 국가기록원 자료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해독이 쉽지 않은 부분까지 번역할 수 있었던 것은 스즈키 유코의 수고에 의지한 바가 크다. 그 외에 국제연맹이나 폐창운동 단체들이 발행한 소책자들의 내용 또한 이 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즈키 유코는 그 해제에서 관계 자료들을 통해 일본의 공창제를 인신매매 제도로 간주하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위선과 회피로 존슨 조사단을 대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와 ‘국가의 체면’ 차원에서 일본 공창제를 비판하면서 피해자를 타자화하고 식민지를 시야에 두지 않았던 폐창운동가들의 태도를 지적하였다<sup>29)</sup>.

본 자료집은 모두 3장으로 구성하였다. 제 I 장의 주제는 <국제연맹 동양여성아동매매 실지조사단과 조선총독부>로 주로 한국 국가기록원의 소장 자료가 기초가 되었다. 그 외에 조선 관련 자료라고 판단된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의 소장 자료도 추가하였다. 주로 국제연맹 일본사무국과 각 지역 영사관이 외무성에 보내온 존슨 조사단의 동정과 조사 내용 및 일제권력의 대응 상황을 척무성이 조선총독부(주로 경무국과 외사과)에 보낸 문서들이다. 존슨 조사단의 조사방식과 내용, 그 성격에 대응하여 일제 권력들 사이에서 회피 논리를 만드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민지 조선과 타이완, 관동주, 그 외 방인-일본인, 조선인, 타이완인- 여성의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베트남, 필리핀, 상하이, 샤먼 등 지역의 실정과 일본 정부의 대응 상황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제2장의 주제는 <동양 여성아동매매 실지조사 보고서와 일본 정부의 대응>이다. 존슨 조사단은 1932년 7월 실지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국에 의견을 물었다. 그 내용을 번역한 것이 II-1. 동양 여성아동매매 확장 실지조사: 일본에 관한 보고(1932.7.31.)이다. 일본 정부는 창기, 예기 등에 대한 일본의 성 관리 시스템이 인신매매 제도가 아니라고 해명하는 데 중점을 둔 의견서(II-2. 동양 여성 아동매매 실지조사: 일본에 관한 보고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장은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다(II-3. 동양 부녀매매 실지조사 보고 심사위원회 경과 보고 송부의 건). 존슨 조사단의 최

26) 市川房枝 編., 『日本婦人問題資料集成 第一卷=人權』, ドメス出版, 1978.

27) 船橋治 編., 『買売春問題資料集成』 19~21, 不二出版, 2003.

28) 鈴木裕子·山下英愛·外村大, 『日本軍「慰安婦」關係資料集成(下)』, 明石書店, 2006.

29) 鈴木裕子, 앞의 글. 709-718쪽.

종보고서는 1933년 1월에 제네바에서 제출되었다. 본 자료집에서는 주제를 집중시키기 위해 국제연맹의 여성아동매매 조사 관련 정보와 제국일본에 관계된 내용에 집중하여 자료를 번역하였다. 일본에 관한 최종보고서 내용은 일본 공창제는 인신매매 제도와 같은 것이라는 지적과 일본의 식민지 상황에 대한 무관심으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제3장은 당대 신문, 잡지 등에 실린 관계 기사 모음이다. 조선 관련 신문잡지 기사는 직접 수집한 것이고, 일본과 영어권의 언론 동향은 당시 존슨조사단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본정부가 스크랩해 놓은 것들이다. 조선 사회에 보도된 국제연맹의 여성아동매매 논의 과정과 협약 내용, 그리고 존슨조사단 방문에 대한 언론의 보도와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일본정부의 공식 입장과 거리가 있는 일본 경찰의 여성매매 인식도 흥미롭다.

이 자료집은 여성매매 및 국가 성관리 제도를 둘러싸고 전개됐던 당시 국제적 논의와 도덕적 기준, 이에 대응한 후발 제국주의 국가인 일본정부의 입장, 이러한 공식적인 입장과는 거리를 두었던 실무자들의 인식과 실제 여성매매 실태,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되었던 식민지 문제를 탐구하는 기초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일본군‘위안부’제도가 식민지의 여성 동원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도 배경이 된다. 아무쪼록 이 자료집이 다양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동북아역사재단 편, 『식민지 조선과 일본군‘위안부’ 자료집 I: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도항 통제(번역·해제 편), 동북아역사재단, 2020.
-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운동』,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6
- 송연옥 외, 『군대와 성폭력: 한반도의 20세기』, 선인, 2012.
- 캐롤라인 노마 지음, 유혜담 옮김, 『위안부는 여자다: 여성주의 관점으로 ‘위안부’ 역사를 복원하다』, 열다북스, 2020.
- 송연옥 외, 위의 책; 아마시타 영애 지음, 박은미 옮김, 『내셔널리즘의 틈새에서: 위안부 문제를 보는 또 하나의 시각』, 한울아카데미, 2012.
- 川田文字, 『戦争と性: 近代公娼制度・慰安所制度をめぐって』, 明石書店, 1995
- 小野澤あかね, 『近代日本社会と公娼制度: 民衆史と国際関係史の視点から』 吉川弘文館, 2010
- 林葉子, 『性を管理する帝国: 公娼制度下の「衛生」問題と廢娼運動』大坂大學出版會, 2017.
- 市川房枝 編, 『日本婦人問題資料集成 第一卷=人權』, ドメス出版, 1978.
- 船橋治 編, 『買売春問題資料集成』 19~21, 不二出版, 2003.
- 鈴木裕子·山下英愛·外村大, 『日本軍「慰安婦」関係資料集成(下)』, 明石書店, 2006.
- 조시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역사와 법」, 『법사학연구』 49, 2014.
- 조시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통해서 본 1904년 백인노예매매의 진압을 위한 협정」, 『법학논고』 47, 2014.
- 조시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통해서 본 1910년 백인노예매매의 진압을 위한 국제협약」, 『법학연구』 42, 2014.
- 조시현,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법의 발달과정」, 『법과사회』 46, 2014.
- 박정애, 「일본군‘위안부’의 강제동원과 성노예: 공창제 정쟁과 역사적 상상력의 빈곤」, 『페미니즘 연구』 19(2), 2019.
- 송경호, 「마리아 루스 호 사건을 통해 본 메이지 일본에서의 인권 개념 수용」,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21(1), 2022.
- 鈴木裕子, 「東洋婦人兒童売買実施調査団と国際連盟における婦人売買問題: 「婦女禁売」問題と日本政府の対応を中心に」, 『日本軍「慰安婦」関係資料集成(下)』, 明石書店, 2006.
- 眞杉侑里, 「‘人身売買排除’方針に見る近代公娼制度の様相」, 『立命館大学人文科学研究所紀要』 93, 2009.
- 藤永壮, 「植民地公娼制度と日本軍「慰安婦」制度」, 『植民地と戦争責任』, 吉川弘文館, 2005
- J. Mark Ramseyer, “Contracting foe sex in the Pacific War”,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65, 2021.
- Megan Ross, “Morality Police: Sexuality Governance at the League of Nations”, the degree of Doctor of Juridical Science Faculty of Law University of Toronto, 2020.

## [토론문]

### 제국일본의 성폭력 시스템 관계 자료집 시리즈 해제:

『식민지조선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료집Ⅳ 국제연맹 동양여성아동매매 실지조사단과 제국 일본의 인신매매』 (동북아역사재단 2022) (박정애)

백재예(매사추세츠 주립대 정치학과)

#### 1. 일본의 성관리 정책에 대한 당시 다양한 시각 중 일본 경찰의 시각

해제에 따르면, 이번 자료집은 20세기 초 일본의 ‘위안부’ 제도 운영이 당시의 국내, 국제법의 측면에서 위법이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을 넘어서, 일본이 어떻게 양쪽의 법이 지닌 권한과 한계를 활용하여 성관리 정책을 합법화하고, 유지했는지 보여준다. 기존 일본 연구자들이 생산한 넓게는 여성문제, 좁게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한 자료집들과의 연계 속에서 여성아동매매라는 사안 자체와 국제연맹의 동양 여성아동매매 실지조사단의 조사과정을 둘러싼 보다 다양한 입장(일본 정부, 일본 경찰, 존슨조사단, 조선의 언론, 일본과 영어권의 언론)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추가했다는 점에서 추후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 보인다.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저자가 일본 경찰이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과 다른 여성매매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언급한 부분(p.7)인데, 일본 경찰이 당시 어떤 부분에서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다. 그리고 그것이 저자가 해제 서두에 언급한 1930년대 후반의 일본군과 경찰 당국의 ‘위안부’ 제도 운영 방식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연결되는지 궁금하다.

#### 2. 동양 여성아동매매 실지조사 최종보고서 이후 일본의 대응과 일본군 ‘위안소’ 설치 및 운영

해제의 설명에 따르면, 19세기 말부터 일본은 국제사회의 비판과 국내의 요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최대한 기본적인 성 동원, 성 관리 정책을 합법이라는 형식을 통해 유지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해제에서 제시된 국내외의 관련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이해해 보면, 마리아 루스호 사건으로 일본의 예창기제도가 노예매매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아, 예창기해방령을 공포해 ‘문제를 해결’하는 듯 보이지만 곧 각종 규칙들을 제정하여 근대적인 성관리 정책을 확립했다. 또, 1920년대에 여성아동매매 국제협약에 가입하는 한편 식민지, 조차지는 보류하는 조건을 유지하기도 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일본의 공창제의 소개업 허가제도라는 일본 국내법적으로는 합법화된 제도가 여성아동매매 국제협약에 위배된 것이고 지적하는 내용을 1933년 제출된 최종보고서에 포함시켰을 때, 그 이후에 일본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궁금하다. 이는 존슨 조사단이 꾸러져 조사가 이루어지던 1930년 10월에서 32년 3월의 시기가 일본의 1차 상하이 침략과 32년 국제연맹 탈퇴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 그리고 1차와 최종보고서가 그로부터 각각 약 5개월, 1년 후에 후에 제출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중일전쟁 이후 전시 일

본문 ‘위안부’ 제도가 입안, 설치, 운영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된다는 점 때문이다. 즉, 최종보고서 제출 이후에 일본과 국제사회가 각각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 해당 자료집에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만약에 이번 자료집에는 조사보고서 제출 이후의 맥락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과연 이를 보여주는 자료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저자의 의견이 궁금하다.

### 3. 일본의 공창제와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위한 기여와 추가 자료 수집 제언

이 자료집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일본에서 가능했던 사회구조적 조건과 성매매 및 인신매매 실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현재 해결해야 할 사회정의, 전후정의 문제로서의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주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해제에서 언급하듯, 현재 여성아동매매 억제 협약과 실지조사단의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일본 공창제의 반인도적 성격과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학자들과, 반대로 공창제가 합법이기 때문에 국가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역사부정론자들이 대립하고 있다. 저자는 해제에서 국제연맹의 동양 여성아동매매 실지조사단의 조사와 보고에 관련하여 수집된 이번 자료들이 각각의 대립을 넘어서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불필요한 정쟁’을 넘는데 이 자료집이 대립적 입장 각각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기여가 어떻게 ‘불필요한 정쟁’을 넘어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자의 생각이 궁금하다. 추가로, 그와 같은 취지에서 추후에 더 수집되어야 할 자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궁금하다.